

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2008 연구과제

arts change the world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 2008. 8.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2008년 8월 인쇄

2008년 8월 발행

발행인 김정현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0

전화 02-760-4500, 4600

팩스 02-760-4709

홈페이지 www.arko.or.kr

메일 arko@arko.or.kr

이 보고서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 2008. 08.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이 보고서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08월 일

연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연구원 :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이충훈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I. 연구 목표 및 방향	18
	II. 연구 범위	20
제2장	지역문화진흥법안의 탄생 배경	
	제1절 : 지방자치제도와 문화행정	
	I.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의 원리	22
	II.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문화행정의 필요성	23
	제2절 : 지역문화진흥법의 필요성	
	I.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	29
	II.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1
	III. 지역에 맞는 문화행정체계의 제도화	32
	IV.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3
	제3절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추진 경과	34

제3장	지역문화진흥법(안)에 관한 기존의 논의	
	제1절 : 주요 쟁점	
	I. 문화복지사 자격 도입 여부	36
	II. 문화도시의 지정	43
	III.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49
	IV. 지역문화기금의 설치 여부	54
	V. 지역문화시설 지원 여부	57
	VI.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설치 여부	60
	VII. 지방문화원 진흥 관련 조항과의 충돌 여부	61
제4장	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제1절 : 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I. 의의	66
	II. NEA	67
	III. 주예술기구	70
	IV. 광역예술기구	71
	V. IMLS	72
	VI.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	73
	VII. 공공서비스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GSA)	74
	제2절 : 일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I.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75
	II. 독립행정법인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	78
	III.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법	82

제3절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법제	
I. 서설	84
II. 독일	86
III. 오스트리아	110
<hr/>	
제5장 결론 :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있어 고려할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I. 머리말	138
II. 목적 규정	140
III. 정의 규정	142
IV.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적 정합성 검토	144
V.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구 설치 여부	147
VI. 문화도시 등 조성	152
VII. 기금	155
VIII. 지역문화시설 지원 여부	157
<hr/>	
참고 문헌	159

제1장

서론

- I. 연구 목표 및 방향
- II. 연구 범위

I. 연구 목표 및 방향

이 보고서는 현행 지역 문화 진흥 정책 추진 체계 및 관련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안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문화진흥법안'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i)문화복지사 자격 도입 여부, (ii)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첩 여부, (iii)지역 문화기금의 설치 여부, (iv)지역문화시설 지원 여부, (v)지방문화원 진흥 관련 조항 충돌 여부 등을 논의한다. 그리고 지역문화 정책과 관련된 여타 관련 법률을 검토한다. 예컨대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포육지원법, 지방자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과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그런 다음, 각 논점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현행법상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된 법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7(협의체 구성),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7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등이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7조는 "도서관 및 문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문화 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므로 지역문화 진흥 연구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한국지역문화진흥원 내지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사용 내지 매각 등에 있어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7조와 관련하여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의 가능 여부를 재검토한다.

그 밖에 국토계획법 제37조와 관련하여 '문화지구 조성' 가능 여부를 재검토한다. 그런 다음,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진흥원의 설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협의체와 그 기능 면에서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외국의 지역문화진흥법을 고찰한다.

그런 다음, 전술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각 논점에 대한 제언을 재정리하고 덧붙일 내용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문화정책 환경에서 취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래지향적인 역할, 지위 및 기능의 발전적 규정 및 제도화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II. 연구 범위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2001년 '지역문화의 해' 행사, 광역 단위 공공문화재단(위원회)의 설립(경기문화재단 외 5곳),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 전개 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도래 및 지역 문화예술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성숙에 따라 2004년 12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6년 5월 '지역문화진흥법안'이 발의(이광철 의원 외 31인, 2006년 5월 10일)되었지만, 제17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구성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의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 법안의 발의 이래 논의된 사항을 실증적(positive)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normative)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철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과 (i)고흥길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 및 (ii)최구식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문화시설지원법 제정안을 상호 비교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서 (i)문화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여부, (ii)지역 문화기금 설치 여부, (iii) 지역문화시설 지원 여부, (iv)지방문화원 진흥 관련 조항 충돌 여부 등을 분석한다.

제2장

지역문화진흥법안의 탄생 배경

제1절 지방자치제도와 문화행정

- I.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의 원리
- II.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문화행정의 필요성

제2절 지역문화진흥법의 필요성

- I.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
- II.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III. 지역에 맞는 문화행정체계의 제도화
- IV.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1절 : 지방자치제도와 문화행정

I.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의 원리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 차원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과 민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각성 때문에, 현행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문화진흥 의무를 실정화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하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상 문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본 내용을 규정한 기본권 조항으로 학문·예술·사상·교육·언론·출판 등의 자유에 관한 조항으로 대별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69조에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¹⁾

이렇듯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년, 85면.

II.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문화행정의 필요성

1.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1990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²⁾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로 법정기간 내에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선거의 실시가 연기되었고, 그 이후 1994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4개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은 (i)지방행정에 대한 정당국가적 경향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ii)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iii)지방주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사무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주민을 민주적으로 교육하고, (iv)경제·사회·문화 정책 등을 분업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분업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³⁾

2. 문화행정의 필요성

국민의 교양을 증진하고 정신생활의 풍요로움을 확보하고 증진하는 것은 현대의 문화국가에서 당연한 요청이다. 그것은 문화예술의 면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기여한다. 그러나 문화의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보다 많은 문화, 양질의 문화를 국민들로 하여금 향수하게 하고 아울러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적극적 국가에서는 더욱 더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임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행정의 필요성

2) 성낙인,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08년, 1073면.

3) 권영성, 「헌법학원론」 제8판, 법문사, 2008년, 237면.

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⁴⁾

문화행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는 국가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있고, 지방자치행정의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동법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의 변천 과정

지역의 발전은 그 곳에 사는 '사람의 번영'으로 이해해야지, '장소의 번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리적인 분산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 역시 물리적인 분산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중앙정부-중앙무대의 권위만 높여주는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머물고만 말 것이다.⁵⁾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와 문화분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유의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문화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문화정책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원성·창의성·지역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향토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더 적합하다 할 것이다.

1960년대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치중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근대화라는 경제성장이 정부의 가장 큰 목표였으며, 경제성장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고 할 것이다.

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제15판, 박영사, 2007년, 805면.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류정아 책임집필), 「한국의 지역문화-현황 및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대왕사, 2008년, 667면.

1970년대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민족 정체성 확립에 문화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조직,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이 설립되었으며, 문화예술을 위한 기금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통문화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예술의 진흥과 대중문화 창달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만 이 시기에는 문화정책이 정권의 홍보나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문화발전이 경제사회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제기되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국가의 문화진흥의 의무를 명기하였다. 이 시기의 문화정책의 내용은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며, 1987년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를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문화예술인의 의견이 반영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문화예술 부문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1990년대에는 문화예술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문화복지국가 실현하기 위해 1990년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를 발족하여 명실상부한 문화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문화정책도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지방의 특색에 맞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서는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문화 창조력 제고, 문화매개 기능의 확충, 문화향수의 확대, 지방문화 활성화, 국제문화교류를 구체적 실현 목표로 설정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문화복지를 강조하였고, 구체적인 실현방향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실현하였다.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IMF 관리 체제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의 1%로 편성하였다.

2000년대의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도시와 문화의 결합을 중요시하여 도시 개발

시 문화에 대한 투자를 중요 요소로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문화를 이용한 '도시마케팅'을 활성화하였다. 문화정책은 사회정책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4. 기존의 문화진흥 관련 법

(1)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233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정목적에서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18차에 걸쳐 일부·전부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본래 문화예술의 진흥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다만 2005년 1월 17일 제4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8호로 제정되었다. 지방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i)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ii) 향토사(鄉土史)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보존, (iii) 지역문화 행사

의 개최, (iv)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v)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vi)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vii)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viii)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 (ix)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3)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어 각각의 분야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법에 의하면 제31조에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i)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ii)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 (iii)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도서관, (iv)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집에는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0조).

5. 지방자치와 문화정책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시해야 할 점은 단순히 중앙집권적인 행정업무를 지방에 일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맡김으로써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과 시스템구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문화의 현실은 급격한 근대화화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불균형 성장정책에 기인한 지역경제 격차로 인한 문화의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사회교육의 불균형과 맞물리면서 지역간 문화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⁶⁾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실천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경우에도 문화정책의 실천 주체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지방시대의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풍요로움,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이는 지방행정의 궁극적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⁷⁾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의 수립이나 실천의 주체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행정을 실천하기에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행정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만 진정한 문화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문화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운영을 위한 법규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정리할 수 있다.

문화정책은 중앙집권화와 지역분권화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집권화와 분권화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분권화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 활동이 그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화정책의 중앙집권화는 지방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문제점들을 중앙정부가 상황에 따라 평가 및 검토하고, 지원금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격려하며, 법률상의 근거와 행정적인 절차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각 지역이 자신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지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화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통해 그 뿌리를 단단히 뺏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06년, 223면 이하.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류정아 책임집필), 앞의 책, 679면.

제2절 : 지역문화진흥법의 필요성

I.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자치단체 등을 표방하면서 지역 내에 산재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역사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였다. 특히 지방문화축제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참여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지역간 경제·사회·교육의 불균형 현상이 문화적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시·도·광역시·군, 도·농 기초자치단체 간의 문화격차가 심화되면서, 각 지역 간의 문화적 단절과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역적 불균형 외에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문화정책으로 인하여 각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수립이 어렵게 되었고,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가 일부 지역(특히 수도권) 주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지방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정책의 수립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지식정보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고 기존의 지역문화정책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법률 역시 지역문화 진흥보다는 지역문화 기관의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역문화의 육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 육성의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기존의 법률을 통해 지역문화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은 지역문화정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예술의 진흥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문화 기관 중 특히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제정된 법이라는 점이다. 즉 이 두 법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단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적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매우 미흡한 면이 많다고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정책개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지방문화진흥·재정 등 지역문화 진흥체계를 기본적·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규로서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II.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문화 분야는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방거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불균형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고유하고 특성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의 문화를 지방에 그대로 이전하려는 획일적이고 중앙중심적이며 공급중심적인 문화정책을 펴 온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문화시설의 설치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즉 지방의 문화시설은 지역의 수요, 역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맞는 문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문화시설의 형태를 그대로 지방에 옮겨오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문화시설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역의 문화행사 역시 지방의 특성을 살린 그 지역만의 문화행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행사를 모방하거나 다른 지역의 행사를 종합한 소위 백화점식 행사를 반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어딜 가나 비슷비슷한 문화행사만을 보게 되어, 타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1세기에는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예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지역의 혁신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문화경쟁력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의 혁신은 즉 문화의 혁신을 의미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역시 문화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불균형적인 문화 상황은 국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 발전이나 국가혁신에 장애물이 될 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획일적이고 불균형적인 문화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여러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라 평가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체계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이라 평가될 수 있다.

III. 지역에 맞는 문화행정체계의 제도화

지역문화는 다양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다양한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지역에 맞는 문화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발전해야 그 지역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활발히 활동해야 그 지역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이 미비하다면 어쩔 수 없이 서울 중심의 문화가 지방에 그대로 전파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서울 중심의 문화가 지방에 침투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문화행정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

물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수 있는 여러 업무를 지방에 이관하거나, 정부의 업무 중 민간이관이 가능한 부분을 대폭 민간단체에 이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업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에 이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정책의 경우 그 지방에 맞는 문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방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 정책을 이관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의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정책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이라 평가될 수 있다.

IV.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는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를 위하여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개발하거나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수요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문화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지역사회에 맞는 적합한 문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3절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추진 경과

지역문화를 진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지역문화의 육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문화과가 있으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보다는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하반기부터 문화관광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4년과 2005년까지 문화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각 지역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역문화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초안을 작성하였다.

2006년 5월 10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의원 32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쟁점 조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006년 9월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후, 2007년 11월 19일, 2008년 4월 28일, 2008년 4월 29일에 이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지역별 문화도시특별법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과 상충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자구제등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 미루어졌다.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새로운 지역문화진흥법을 준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광철 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은 폐기되었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문화의 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추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인 (i)작은 정부의 지향, (ii)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분담과 권한 이양, (iii)정부업무의 민간 이관 등을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3장

지역문화진흥법(안)에 관한 기존의 논의

주요 쟁점

- I. 문화복지사 자격 도입 여부
- II. 문화도시의 지정
- III.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 IV. 지역문화기금의 설치 여부
- V. 지역문화시설 지원 여부
- VI.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설치 여부
- VII. 지방문화원 진흥 관련 조항과의 충돌
여부

제1절 : 주요 쟁점

I. 문화복지사 자격 도입 여부

1. 문화복지사의 의의

지역문화진흥법(안)⁸⁾ 제2조 제9호에서는 "문화복지사"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역문화시설에서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3조에서는 문화복지사의 양성·배치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국가는 지역의 문화기획, 문화시설 관리,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해설, 문화행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 사군구 및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시설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⁹⁾에서는 문화복지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문화지도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 제2조제2항에서는 지역문화지도사란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 개정안 제20조제1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지역문화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 과정을 마친 자에게 지역문화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문화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문화기관 및 단체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지역문화지도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시설지원법(안)¹⁰⁾ 제2조제5호에서는 "지역문화지도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역문화지도사란 문화기획·문화예술교육 등 지역문화 활동을 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를 의미한다. 동법안 제8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8) 이광철의원 등 32인이 2006년 5월 10일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의미한다.

9) 고흥길의원 등 43인이 2005년 10월 17일 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10) 최구식의원 등 16인이 2006년 7월 10일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시설지원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지도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문화기획, 문화예술교육,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수행, 문화행사 주최, 지역문화 해설, 지역문화시설의 관리,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지원을 들고 있다. 한편 동법안 제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시설에 지역문화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3개 법안에서는 명칭이 문화복지사와 지역문화지도사라는 개념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지역문화 활동을 담당하는 자로서 지역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지방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이 있고, 보건복지가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보건복지가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여성회관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2. 문화복지사 도입의 필요성

지금까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가는 많은 일을 해왔다. 각 지역에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문화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오면서 지역민들의 문화복지에 입각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의 투입이 있었으나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재정 투입에 비례하여 향상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 전문가나 학자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첫째 지역문화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현재 지역문화가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영위가 있어야 하고 지역문화는 지역의 특수성, 즉 문화의 다양성에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의 현상은 대부분의 지역에 유사한 시설에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체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문화는 경험적 가치재의 속성이 강해 직접 체험해 보아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 이하의 내용은 전병태, 「지역문화진흥법(안) 시행령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년, 67면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준화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서 운영하다 보니 그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유사한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한시적이거나 프로그램의 활용이 매우 드물어 잘 갖추어진 문화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우리나라의 문화 관련 시설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문화 관련 시설(hardware)이 선진국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software)도 다양하지 못하고, 그 활용 빈도가 낮다는 점이 현재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의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은 무대예술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 학예사, 큐레이터 등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의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문화향수와 문화창조 활동을 영위해야 할 장소인 지역문화복지시설의 대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인하여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지역에 지역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시설(hardware)의 건립에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지역문화(software)를 운영할 주체인 전문인력의 양성에는 소홀했던 결과 지역문화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잠시 잊고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시설을 운영할 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문화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야말로 지역문화의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정신적 가치재를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문화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문화복지의 특성상 짧은 시일 안에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성도 많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화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일선에 배치된 문화복지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립된 문화시설, 특히 문화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¹²⁾

12) 위의 논문, 68면.

3. 지역문화복지사 도입의 문제점

(1) 문화복지 업무 영역의 문제점

문화복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을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문화복지사라는 개념을 도입할 경우 그 업무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 문화복지사의 업무 영역을 지역의 문화기획, 문화시설관리,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해설, 문화행사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문화복지사를 두는 이유는 문화복지를 실현할 전문가를 일선에 배치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업무 영역을 포섭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단기간 내에 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업무 영역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이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문화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문화복지사 자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에 목적이 있을 뿐, 지역의 문화복지에 초점을 둔 법률이 아니라는 점도 문화복지사의 개념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2) 타 자격증과의 충돌 문제

우리나라의 문화 업무와 관련된 자격제도로는 국가자격으로는 학예사(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관광안내사(관광진흥법)가 있으며, 민간자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숲해설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 제도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역문화예술가, 향토사학자, 문화자원봉사자 등 순수한 민간단체도 지역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복지사의 지역문화해설 영역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화복지사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문화복지사를 문화복지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문화복지사는 소외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문화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으로 문화복지사를 바라본다면 문화복지사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 자격제도가 바로 사회

복지사 자격이다. 사회복지사는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가정부) 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교부하는 자격증 제도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고 불렀으나, 1983년 법률 개정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경제적·심리적·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사, 아동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노인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사, 여성 및 가족 복지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화적 혜택을 대상자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만약 장애인 복지사가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하여 연극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사의 업무에 해당하게 된다. 이 공통된 영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3) 자격 신설의 문제

문화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등 전문기관에서 문화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과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나 대학원에는 문화복지 전공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복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과 과정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몇몇 응용문화 관련 학과의 예를 들면 예술경영학과, 문화기획학과, 예술행정학과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전공들의 교육 과정도 문화 콘텐츠의 기획, 관리, 마케팅 등 상업적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³⁾

국가자격증은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가진 자가 취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소양만을 갖추었다고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격기본법」 제6조에서는 국가자격을 신설할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13) 정갑영, 「문화복지사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년, 106면 이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의를 요청할 경우 국가자격 신설 등의 목적과 필요성, 자격검정기준과 자격제도 운영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문화복지사의 업무 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기존의 자격증과 업무 영역이 겹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자격의 신설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인력 배치의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 시군구 및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시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역문화진흥법(안) 제13조제2항).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실제 채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의 예에 따라 배치대상을 읍·면·동, 시·군·구 및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사를 읍면동, 시군구에 배치할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사와 업무 영역이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의 집 및 공공문화시설에 문화복지사를 배치할 경우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에서는 국공립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국공립교육시설로 국공립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도서관, 문화의 집에는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문화복지사의 업무 영역이 중복될 수밖에 없게 된다.

4. 결론 및 제언

문화복지의 개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격을 일종인 문화복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은 문화복지의 전문인력으로 문화복지사를 개념정의한 후, 이들이 일선에서 문화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문화국가의 구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공인되지 않은 국가자격의 남발은 기존의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불신임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문화복지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기존의 국가자격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문화복지사의 업무영역을 전반적인 문화예술 업무 담당의 문화복지가 아니라 장애인,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문화적, 정신적 삶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업무 영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¹⁴⁾ 이렇게 업무 영역을 확정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문화복지사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인력의 배치를 한다면 기존의 사회복지사와의 업무 중복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문화복지사 자격을 국가검정자격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사를 전문인력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복지사 제도는 민간에서 우선 실시된 후, 민간자격증 제도로 변천된 후, 현재의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문화복지사 제도는 우선 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 한 후, 민간 차원의 실행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 차원의 실행 과정을 통해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다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국가자격제도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문화복지사의 배치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사를 농어촌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문화복지사를 배치한다면, 이는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문화복지사는 문화 관련 전문인력으로 이러한 전문인력의 배치는 고용창출, 전문직종의 창출, 하드웨어 중심에 치우쳐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다만 문화복지사의 업무영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자격을 도입할 경우 그 부작용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상황이라 할 것이다. 2008년 7월 현재 논의되는 지역문화진흥법안의 제정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왜냐 하면 지역문화진흥법안의 제정이 시급한 바,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의 상당수는 이 법안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결론 부분에서는 배제한다.

14) 위의 책, 120면.

II. 문화도시의 지정

1. 문화도시의 의의

문화도시라 함은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확충, 문화 이벤트 및 지역축제의 개최, 도시 미관과 경관의 개선 등 지속적인 문화 투자가 이루어져 독자적 개성과 전통을 유지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지역문화진흥법(안) 제2조 제5호). 국가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안) 제14조).

2. 문화도시 지정의 필요성

문화도시의 지정은 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문화도시의 지정을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매우 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 여부는 얼마만큼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을 효율적으로 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라고 평가된다.¹⁵⁾ 하지만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중앙정부가 수립한 문화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한 시기는 1990년대 말부터이라고 평가된다. 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경관 및 문화환경 조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산물 등을 이용한 문화축제가 활발하게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관광문화축제는 1996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2007년 현재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만도 51개에 달할 정도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축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15) 전병태, 앞의 책, 104면.

지역문화축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함에 따라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문화축제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예를 들어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함평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문화정책 및 문화행정을 떠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문화정책 및 문화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안)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문화도시 지정의 문제점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7조 상의 시범도시와의 차별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7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시범도시와의 중복 여부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안)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법(안) 제2조와 제14조 이하의 문화도시지정 관련 규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시범도시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시범도시와 지역문화진흥법(안) 상의 문화도시는 유사한 개념이나 법 소관 부처, 대상 분야, 지정 절차, 국고 지원 여부, 성격 등이 상이한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우선 법 소관 부처는 시범도시의 경우 국토해양부이지만,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시범도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전 분야가 대상 분야지만,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안)에 의하여 전통·역사·영양 등 문화 분야에 한정하여 그 대상 분야를 정하고 있다.

셋째 시범도시는 건설교통부 소속 중앙도시계획위원회¹⁶⁾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

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6조 이하). 하지만 문화도시는 국무총리 소속 문화도시조성위원회¹⁷⁾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시범도시의 경우 국고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7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고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문화도시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안)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고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시범도시는 지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는 성격을 가진 데 반해, 문화도시는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즉 문화도시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에서 국고 재원 투입 여부, 지정의 형평성 등을 심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 문화도시를 지정하려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지역 거점 문화도시의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문화도시의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과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시범도시가 문화도시를 대체할 정도로 비중 있는 개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범도시는 지역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시범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에 불과하며, 시범도시로 선정된 경우도 광주(문화의 거리)와 목포(남약신도시) 두 군데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시범도시의 경우 국고 지원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나 지구의 지정,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관광

16)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 참조.

17) 지역문화진흥법(안) 제15조에 의하면 문화도시조성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 차관이 되며, 위원 중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각 행정각부의 명칭은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특구의 지정이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관광레저도시, 혁신도시 등의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특별히 문화도시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시범도시와 중복되는 개념이므로 문화도시의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의 경우 광주광역시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인데, 이 법의 제정 당시에 건설교통부(지금의 국토해양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시범도시와 중복되는 개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범도시와 문화도시는 별개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의 지정 이유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지역 거점 문화도시의 육성 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시범도시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문화도시의 지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틀 안에서 문화도시의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화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와의 중복성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i)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ii)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iii)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안) 제19조에서는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라는 표제 하에 "시·도지사는 (i)문화시설과 문화 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ii)문화예술 활동이나 지역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iii)문화의 거리, (iv)그 밖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지구란 '특정한 문화적 현상이 특화를 이루어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문화를 위한 환경'이 밀집되어 '문화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문화적 환경을 통해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문화지구의 지정조건은 크게 문화성, 지역성, 정책성을 들 수 있는데, 문화성은 하나의 문화적 특성 혹은 양상을 나타내는 것, 지역성은 그와 같은 문화적 양상이 지역적 특성과 동의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정책성은 정책을 통해 보존·촉진·육성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일 것을 의미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특징적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단지 문화 관련 요소뿐 아니라 지역 전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문화와 지역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의 컨셉을 이루도록 하여 다양한 요소가 생태계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문화지구의 도입은 물리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효과와 의의를 가진다. 그 중 가장 큰 의의는 하부적인 물리-공간적인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화지구 지정의 의의는 문화와 지역 간 교류 및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특정 문화요소가 밀집하여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 지역에 대해 지역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는 그 특성 상 요소가 밀집되거나 특화되어 지역성을 형성하는 대표 혹은 상징 지역으로 밀집하기 마련인데 문화지구가 조성되면 이러한 문화의 밀집경제 효과를 반영하여 특정요소를 하나의 지역으로 밀집시키는 한편, 이와 같은 요소밀집을 통해 지역을 특화시킴으로써 지역 발전과 동시에 각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조건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 발전과 지역 발전에 있어 큰 의의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삭제하고 제8조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지역문화진흥법(안)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칙 제2조), 문화예술진흥법과의 충돌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화지구가 지방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화지구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이 절실하다고 본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상의 용도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의 용도지구체도가 있다¹⁸⁾.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안)의 문화지구의 지정에 대신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문화지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문화지구를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문화지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우선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의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설치되는 문화지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더욱이 지역문화진흥법(안) 제19조제4항에서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용도지구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측면도 문화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안

2000년대 이후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과 문화의 결합을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제는 문화가 단순한 문화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지역 거점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시범도시와 지역문화진흥법(안)의 문화도시는 별개의 개념으로 문화도시는 시범도시와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문화도시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도시의 설치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18) 이 외에 시행령에는 위락지구와 리모델링지구가 추가되어 있다.

III.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행정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었다. 더욱이 창조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계층제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적 행정조직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효과적이며 현장 대응적인 행정을 펴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더욱이 행정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고객인 다양한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의견이 문화예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의 지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 행정체계 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에 2005년 1월 27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i)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ii)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iii)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iv)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v)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vi)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vii)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은 예술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정신과 전통에 입각하여 민간주도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¹⁹⁾

19) 전병태, 앞의 책, 86면.

2.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의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지역의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위원회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 제20조에서는 특별시, 광역시·도지시는 관할 구역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i)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의 지원·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ii)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iii)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iv)지역문화진흥기금의 운용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 (v)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다른 지역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vi)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vii)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서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이라는 표제 하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시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업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필요성

(1)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문화예술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둔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극히 미미하다는 데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외에, 광주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²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집행 기능이 없이 단순한 심의 기능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문화 진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심사위원회의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다. 더욱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 시장이나 도지사가 겸직하고 있어 본래 취지의 민간자율의 독자적인 지방문화예술진

20) 광주문화예술진흥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병태, 앞의 책, 89면 이하 참조.

흥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²¹⁾

따라서 현재의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심의와 의결이 가능한 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 수립 가능

지역문화정책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정책의 수립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안) 제7조 참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매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안)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면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문화정책의 시행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 내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임용된다면 현장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문화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렇게 수립된 문화정책은 지역의 특색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시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1) 위의 책, 88면.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업무 분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차이점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다. 즉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설치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이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 구역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즉 지역 단위의 위원회이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역문화란 역사적 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적·공간적 단위인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고유의 문화적 유산, 생활문화, 문화산업, 관광산업 및 이에 관련된 활동과 결과물의 총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위원회로서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임에 반해, 지역문화예술진흥회는 각 지역 단위(광역자치단체이건 기초자치단체이건)의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와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임에 반해,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와 예술 이외에 관광·산업까지도 포함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단위의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자립이 100%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즉 지역단위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진흥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은 개개의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 진흥이 모여 총합을 이룰 경우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의 진흥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책무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지역 문화진흥법(안)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문화진흥 위원회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국가 단위의 문화진흥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며, 이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된 영역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며, 각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업무 중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문화예술진흥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평가된다.

IV. 지역문화기금의 설치 여부

1. 지역문화 진흥 재원 확보의 필요성

문화예술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견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선연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중앙정부에서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마련에 노력하고 있고 2000년에는 전체 예산의 1%를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하는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역시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측면만 강조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지역문화 진흥은 구호에만 그칠 뿐,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지방세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재원만으로 지방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더욱이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조차 문화예술에 대한 비용지출은 생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낭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국방, 교육, 사회복지 등 국정의 일부로서 파악되어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지역문화진흥법(안) 제29조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 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 역시 지역문화 진흥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안) 제30조에서는 (i)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ii)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iii)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iv)기금운용

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v)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i)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보급, (ii)지역 문화 관련 조사연구출판과 교육 활동, (iii)지역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iv)지역주민의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업, (v)지역의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vi)다른 지역과의 문화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vii)지역의 문화정보화에 관한 사업, (viii)지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ix)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32조).

한편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시, 군, 구에 설치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면서, 기금은 독립된 회계로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31조).

3. 재원의 확보 방안²²⁾

지역문화가 순수지방공공재라면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체재원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총체가 대한민국의 문화라면 지역문화를 순수지방공공재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 예술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진흥기금의 일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는 국가가 지역문화 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하는 기부문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²³⁾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문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

2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병태, 앞의 책, 114면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제의 공제한도 및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독권 부여

지역문화의 진흥에 있어서 재정 지원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 진흥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에게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지원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동법(안) 제31조 제2항), 지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은 기금지원 심의결과와 기금 지원성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31조 제3항).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역문화기금 중 일부(초기에는 지역문화기금 중 대부분)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조성된 재원이라면 이를 감독할 상급기관의 존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감독 권한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3)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체의 외부지원금 비율은 공공지원금이 75%인데 반해, 미국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개인 기부가 62% 정도라고 한다. 위의 책, 124면.

V. 지역문화시설 지원 여부

1. 지역문화 기반 시설의 확충

(1)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안) 제10조 제1항). 여기에서 지역문화시설이란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의 집·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 등 공연·전시·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한다(동법(안) 제2조 제1항 제4호).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10조 제4항).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파악된다.

(2) 동법(안)의 문제점

우선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매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⁴⁾.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하여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 보기 어려우며, 지역문화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할 경우 공공성·공익성이 더욱 강한 다른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예를 들어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4)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참조.

(3) 결론 및 제언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은 지역문화 진흥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국·공유재산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본다. 「국유재산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더욱이 지역문화진흥법(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지역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버금가는 방법으로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유재산법」의 입법정신에 따라 동 조항은 의미 없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공유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 등

(1) 문화예술단체의 국·공유 재산 및 시설의 무상 사용권

지역문화진흥법(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 중 하나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입법례로는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법(안)의 문제점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다. (i)지역문화진흥법(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으로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의 무상사용·무상대부는 곤란하다는 점, (ii)

당해 공유재산의 운영수입은 세입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세출에 계상되어야 할 것인바, 무상사용·무상대부가 허용된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iii)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공유재산을 지원할 여력이 없으므로, 무상사용·무상대부를 받는 단체와 이를 받지 못하는 단체 간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규정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3)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동 규정과 같이 문화예술단체에 어찌면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도 청소년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할 방법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지역문화시설 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될 때까지 국·공유 재산 및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국·공유 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던 제10조 제4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도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VI.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설치 여부

1. 내용

지역문화진흥법안 제27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지역문화진흥법안 제27조 제1항), 이 진흥원은 (i)지역문화 실태조사·분석 및 지역문화지표 개발, (ii)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연구개발, (iii)지역위원회와의 협력 및 지원사업, (iv)지역문화시설·단체 간 네트워크 및 정보화사업 지원, (v)농촌 소외지역 중심 도농교류사업 지원, (vi)지역문화자원 진단평가 및 지역문화사업 컨설팅, (vii)지역문화인력 발굴 및 양성, (viii)지역문화인력 발굴 및 양성, (ix)지역문화사업 개발지원, (x)국내외 지역문화 교류협력사업 지원, (xi)지역문화진흥 혁신모델 개발 및 정보제공 및 (xii)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안 제27조 제3항). 그리고 이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동법안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동법안 제27조 제2항).

따라서 동법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문화산업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도록 되어 있다.

2. 문제점 및 소견

지역사회에서는 진흥원을 통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연구가 수행되는 데다 그 연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진흥원의 설립은 다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므로 지역문화 진흥 연구 등의 업무는 이 기관들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진흥원의 설치에 지역문화 진흥을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려는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사고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VII. 지방문화원 진흥 관련 조항과의 충돌 여부

1. 「지방문화원진흥법」의 문제점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적 주체를 삼을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지방문화원을 둬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을 꾀할 수 있다는 목적 하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각 지역에는 지방문화원을 설립하였으며,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로서 지역문화의 구심체이자 소규모 지역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추진, 지역문화 발굴 및 보존,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근거, 사업 등 지방문화원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다른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 등에 관한 규율이 없어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의 집이나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지역문화시설이나 지역문화행사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원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은 다양한 지역적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문화 진흥과는 거리가 있는 법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문화 주체가 형성되어 있고, 지방문화원 외에 다양한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담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²⁵⁾.

2. 지방문화원 관련 법규의 제·개정

(1)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안)은 고흥길 의원 등 43인의 발의로 2005년 10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지역문화지도사 제도의 신설, 지방문화원 진흥기금의 조성, 지방문화원의 시·도지회 설치, 국가지원금의 지방문화원 우선 사용 의무, 한국문화원연합회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2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성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선방향", 「국회보」 통권 제475호, 국회사무처, 2006년, 107면 이하 참조.

그러나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문화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 즉 다양한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에 대한 법적 고려 내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기대 부응이라는 명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문화시설지원법 제정(안)

2006년 7월 10일 최구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다. 이 법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폐지하고 대신 지역문화시설지원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지방문화원만의 지원이 아니라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시설의 지원도 함께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다만 지역의 문화시설의 핵심 시설로 지방문화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시설지원법에서는 지방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은 지역문화시설이라는 하드웨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고유한 문화정책의 수립·시행,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제공 등 소프트웨어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문화시설지원법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공급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현재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법률 역시 지역문화 진흥보다는 지역문화 기관의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역문화의 육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 육성의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이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이라 생각된다. 지방문화진흥법(안)에서는 지역문화시설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등을 포함하여 하드웨어를 구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라는 큰 범위의 문화적 결과물의 총체를 진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할 것이다.

제4장

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제1절 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 I. 의의
- II. NEA
- III. 주예술기구
- IV. 광역예술기구
- V. IMLS
- VI.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
- VII. 공공서비스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GSA)

제2절 일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 I.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 II. 독립행정법인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
- III.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법

제3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법제

- I. 서설
- II. 독일
- III. 오스트리아

제1절 : 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I. 의의

미국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특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정부부처를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지원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다만 1965년 채택된 '미국연방예술기금과 국립인문학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가치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²⁶⁾

미국에서 예술에 대한 공적인 지원은 미국연방예술기금(이하 'NEA'로 표시;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을 중심으로 실시되는데, NEA는 비영리적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원과 확대, 비영리문화단체의 생존과 성장, 예술과 인문학의 우월성 제고 및 일반대중의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에 집중한다.²⁷⁾ 한편 국립인문학진흥원(이하 'NEH'로 표시;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을 통해 역사, 철학, 언어, 언어학, 문학, 고고학, 법률학, 예술비평, 윤리학, 비교종교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및 공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이하 'IMLS'로 표시;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는 박물관과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전술한 NEA는 미국연방예술위원회(NCA)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NCA는 NEA의 정책 및 사업 방향, 운영 절차에 대한 자문과 재정 지원을 요청해 오는 안건에 대한 검토와 지원대상자 추천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NEA와 IMLS 외에 광역단위 기구로는 50개 주예술기구(State arts agencies, SAAs)와 6개 특별자치정부 산하의 예술기구, 민간 비영리기구인 7개의 지역예술기구(Regional Arts Organizations, ROs) 등이 있다. 주예술기구는 NEA 예산의 20%가 각 주에 분배되어야 한다는 미의회의 결정에 따라 1960년대 말에 각 주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²⁸⁾

이 밖에도 1,500~2000개의 지방예술기구(Local Arts Agencies, LAAs)들이 있으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직접 예산 할당을 받거나 민간 비영리기구의 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26) 이승엽,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2006년 11월, 58면.

27) 위의 보고서, 58면.

28) 양종회/김우식/송도영/이호영, 「미국의 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 2004년, 261면.

II.NEA

1. 의의

NEA는 개인, 세금면제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 주와 지역별 예술담당 부서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는 독립된 연방부서다.

NEA는 미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보급하고 문화기관의 강화를 도모하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예술적 창작 능력을 개발하고 예술가들을 위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각 주 및 지역사회로 하여금 예술 활동에의 참여를 고무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²⁹⁾

NEA는 연방의회에 의해 감사를 받는 미연방정부의 독립 산하기관이다.

NEA의 자문기관으로는 국립예술평의회(National Council on the Arts, NCA)가 있다. 1964년에 창설된 NCA는 1964년 국가예술문화발전법(National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Act of 1964)에 의거하여 창설되었다. NCA는 NEA의 정책, 사업 방향, 운영 절차에 대한 자문, 재정 지원을 요청해온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대상사 추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본래 NCA는 NEA 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26인의 민간자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NEA 원장이 평의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NCA의 위원으로는 미국 내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웠거나 학문적, 인격적으로 문화예술인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추천되었으며,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1/3씩 교체하게 되어 있다. 1997년 미의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14명으로 감축하고 대신 2년 임기로 의결권이 없고 겸직하는 6명의 의원을 따로 임명하였다. 이 밖에도 NCA는 6명으로 구성된 광역 대표단(Regional Representatives)을 두고 있는데, 이 지역대표들은 NEA에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NEA와 지역 예술단체와의 의견 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NEA 원장은 미 상원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원장은 NEA의 정책과 사업 방향 및 절차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로서 지원대상자(또는 지원기관)와 지원액을 결정하고 NCA의 의장직을 겸임하며 NEA내의 기구인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한다.

29) 위의 책, 261면.

지원수혜 자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는 500명 이상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다.

각 예술분야에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는 심사위원은 NEA의 위원, NEA의 직원 및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NEA의 원장이 임명한다.

2. 심사 절차

NEA는 지원자와 단체를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쳐 심사한다.

1단계 : 홍보관리국은 신청서를 분류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2단계 :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의 가부를 검토한다.

3단계 : 최종 추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NEA에 통보한다.

4단계 : NEA의 최종 추천에 입각하여 원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단계 : 신청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3. 주요 지원 사업

NEA의 지원금은 분야에 따라 예술적 창의성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Artistic Creativity and Preservation),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사업(Learning in the Arts for Children and Youth) 및 예술접근성 제고 사업(Challenge America: Access to the Arts) 등이다.

4. 관련 사례

미국 연방헌법 제1차 개정조항(First Amendment)은 민주적 절차를 위한 도구 및 정치적 연설을 보호하는 장치로 충분히 인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치적인 사안과 순수한 엔터테인먼트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되고 있다.³⁰⁾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잡지³¹⁾ 및 영화³²⁾뿐만 아니라 만화책³³⁾ 및 상반신나체의 무용수³⁴⁾로부터 비롯된 것은 모두 연방헌법 제1차 개정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하지만 연방헌법 제1차

30) Alexander Lindey and Michael Landau, 1A Lindey on Entertainment, Publ. & the Arts § 4:1 (3d ed., 2008).

31) See, e.g., *Winters v. New York*, 333 U.S. 507, 68 S.Ct. 665, 92 L.Ed. 840 (1948).

32)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 72 S.Ct. 777, 96 L.Ed. 1098, 1 Media L. Rep. (BNA) 1357 (1952).

33) *Molony v. Boy Comics Publishers*, 277 A.D. 166, 98 N.Y.S. 2d 119 (1st Dep't 1950).

34) *Schad v. Borough of Mount Ephraim*, 452 U.S. 61, 101 S.Ct. 2176, 68 L.Ed. 671, 7 Media L. Rep. (BNA) 1426 (1981).

개정조항은 모든 상황에 있어 모든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거나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v. Finley 사건³⁵⁾에 있어서 미 연방대법원은 NEA에게 예술적 수월성(artistic excellence) 및 예술적 가치(artistic merit)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담보하게 하면서도 아울러 "품위와 존경(decency and respect)"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참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명백히 무효가 될 정도로 연방헌법 제1차 개정조항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Finley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인 제9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품위와 존경" 기준의 충족을 NEA 기금신청인인 예술가에게 요구하는 법률이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vagueness)을 이유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토대로 보더라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³⁶⁾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상고시에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그 "품위와 존경" 기준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³⁷⁾

3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v. Finley, 524 U.S. 569, 118 S.Ct. 2168, 141 L.Ed. 2d 500 (1998).

36) Finley v.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100 F.3d 671, 682 (9th Cir. 1996), quoting Cammarano v. U.S., 358 U.S. 498, 513, 79 S.Ct. 524, 3 L.Ed.2d 462, 59-1 U.S. Tax Cas. (CCH) ¶: 9262, 3 A.F.T.R.2d 697 (1959).

3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v. Finley, 524 U.S. 569, 118 S.Ct. 2168, 141 L.Ed.2d 500 (1998).

III. 주예술기구

최초의 SAA는 1899년 유타 주에 신설된 주예술기구라고 한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SAA로는 1960년 설립된 NYSCA를 최초로 본다. 1967년 의회는 NEA사업자금 중 최소한 20%를 지역발전을 위해 주에게 배분할 것을 결의하였다.

NEA의 정액교부금(block grants)제도의 발단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주들이 SAA를 앞 다투어 설립하게 되었다. 2001년 NEA는 SAA와 RO에 기금지원금의 40%를 할당하였다. SAA는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와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주 전역에 걸쳐 기금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SAA의 형태는 주마다 상이하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NYSCA와 같은 독립적인 예술위원회 모델로 약 50% 정도의 주정부 또는 독립자치정부가 이 모델을 따르고 있다.

SAA의 예산의 정부의 행정 또는 입법기관이 승인하지만 지원금 할당은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는 전문 자문위원단의 조언에 따라 결정된다.

IV. 광역예술기구

ROs는 SAAs가 NEA의 재정보조를 받아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구다. RO의 예산의 70~99%가 정부기관인 NEA와 SAA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이 기구는 준정부기관적 성격을 지닌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NEA와 각주로부터 할당받은 자금의 지원, 해당 지역 내 순회공연 지원 등이다. RO의 설립목적은 문화예술 활동의 지역간, 다주간(multi-state)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주 사이의 모방, 경쟁보다는 협력, 교류, 공동개발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³⁸⁾

RO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간(inter-state) 협력사업, 공연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연예술 순회 지원사업, 특별기금 수여, 교육 실시, 순회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시각예술사업, 그리고 기타 후원자 개발 사업 및 예술 공연의 일괄 판매망 체계 구축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RO로는 미드웨스트 예술연합(Arts Midwest, AM), 퍼시픽 예술문화컨소시엄(Consortium for Pacific Arts and Cultures), 미드 아메리카 예술연합(M-AAA, Mid America Arts Alliance), 미드 애틀랜틱 예술재단(MAAF, Mid Atlantic Arts Foundation), 뉴잉글랜드 예술재단(New England Foundation for the Arts, NEFA), 남부예술연맹(Southern Arts Federation, SAF), 서부예술재단(Western States Arts Foundation, WESTAF) 등이 있다.

38) 양종희/김우식/송도영/이호영, 앞의 책, 272면.

V. IMLS

IMLS는 박물관과 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리더십, 혁신 그리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다. IMLS는 1996년 박물관과 도서관 서비스법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연간 예산은 대략 2억 3000만 달러로 의회에 의하여 예산 승인이 이루어진다. IMLS는 도서관에 대해 주립도서관사업, 토착원주민박물관서비스 사업, 토착하와 이이주민 도서관 서비스 사업, 도서관 리더십 지원금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지원사업, 박물관평가프로그램사업, 보존프로젝트 사업, 리더십 지원금 사업 등도 병행하고 있다.³⁹⁾

39) 위의 책, 277면.

VI.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

스미소니언 협회는 의회가 승인한 위탁기관으로 독립적 성격을 띤 평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위탁기금, 기부금, 보조금, 의회에서 책정한 예산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스미소니언협회는 연구와 조사 결과 출판, 과학, 문화, 역사에 관한 7500만 건에 달하는 연구 및 참고문헌 보존, 예술품전시, 미국의 역사, 미술, 우주탐사, 항공기술, 지구의 역사 등에 관한 유물 전시 및 타 박물관에 대여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 연구 협조 체제의 일익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도 관여하고 있다.⁴⁰⁾

40) 위의 책, 276면.

VII. 공공서비스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GSA)

워싱턴 DC에 소재한 GSA는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건설, 건물의 관리, 보급품 구매와 분배, 재산의 이용과 처분 및 그 밖의 의무사항들을 포함하여 정부의 재산 및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달청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GSA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으로서 시청각 자료의 열람과 콘텐츠 마련, 건축물 내 예술품 설치사업(NEA와 함께), 정부간행물 관리국의 발간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제2절 : 일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I.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平成 13년 12월 7일 법률 제148호)은 (i) 전문(前文), (ii)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6조), (iii) 제2장 기본방침(제7조) 및 (iv) 제3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시책(제8조 내지 제3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구체적으로 보아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관심 및 이해), 제6조(법제상 조치 등), 제7조(기본방침), 제8조(예술의 진흥), 제9조(미디어예술의 진흥), 제10조(전통예능의 계승 및 발전), 제11조(예능의 진흥), 제12조(생활문화, 국민오락 및 출판물 등의 보급), 제13조(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 제14조(지역에 있어 문화예술의 진흥), 제15조(국제교류 등의 추진), 제16조(예술가등의 양성 및 확보), 제17조(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연구기관 등의 정비 등), 제18조(일본어에 대한 이해), 제19조(일본어교육의 충실), 제20조(저작권 등의 보호 및 이용), 제21조(국민의 감상 등의 기회의 충실), 제22조(고령자, 장애인등의 문화예술 활동의 충실), 제23조(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의 충실), 제24조(학교교육에 있어 문화예술의 충실), 제25조(극장, 음악당 등의 충실), 제26조(미술관, 박물관, 도서관등의 충실), 제27조(지역에 있어 문화예술의 장의 충실), 제28조(공공건물 등의 건축에 있어 배려), 제2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추진), 제30조(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의 정보제공 등), 제31조(민간지원활동의 활성화 등), 제32조(관계기관 등의 제휴 등), 제33조(현창(顯彰; 널리 알리어 표창함)), 제34조(정책형성에의 민의 반영 등), 제35조(지방공공단체의 시책)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전문(前文)에서는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하여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사는 기쁨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의 불변의 소원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인간들의 창조성을 계발하여 그 표현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마음의 연결이나 서로 이해해 존중하는 토양을 제공하여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그 자체가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각 국가나 각 시대에 있어서의 국민 공통의 근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 국제화가 진전하는 중에 있고 자기 인식의 기점이 되어 문화적인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향후 변함없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활력 있는 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속적으로 가진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서, 문화예술이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의 정비 및 환경의 형성은 충분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현재까지 길러져 온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독창성이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를 촉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행하는 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도 문화예술을 국민에게 친밀하게 하여 그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도록 포괄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여기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기본이념을 분명히 해 그 방향을 나타내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문화예술진흥 기본법은 특이하게도 전문을 가지고 있다.

동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률은 문화예술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오는 것인 것에 비추어 보아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에 관한 활동(이하 「문화예술활동」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람(문화예술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할 취지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마음이 풍부한 국민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에서는 "정부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조문으로는 제4조, 제14조, 제27조, 제30조, 제35조를 두고 있다.

제4조는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하여 국가와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책정하여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는 "국가는 각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 등에의 지원, 지역 고유의 전통예능 및 민속예능(지역민에 의하여 행해지는 민속적인 예능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는 "국가는 국민에게 친밀한 문화예술활동 장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있어서 문화시설, 학교시설, 사회교육시설 등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는 "국가는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35조는 "지방공공단체는 제8조 내지 제34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시책을 감안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II. 독립행정법인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

1. 의의

2001년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등이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3년에는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별도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독립행정법인'을 문화예술분야에 도입한 것은 정부 중심의 행정조직의 운영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⁴¹⁾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평성 14년 제12월 13일 법률 제163호; 이하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으로 표시)은 (i)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6조), (ii)제2장 임원 및 직원(제7조 내지 제11조), (iii)제3장 평의회(제12조 내지 제13조), (iv)제4장 업무등(제14조 내지 제17조), (v)제5장 보칙(제18조 내지 제20조), (vi)벌칙(제21조 내지 제22조) 및 (vii)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은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에 따른 일본예술진흥회의 목적은 예술가 및 예술에 관한 단체가 실시하는 예술의 창조 또는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그 밖의 문화의 진흥 또는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일본 전래의 전통적인 예능(제14조 제1항에서는 「전통예능」 이라고 한다)의 공개, 전승자의 양성,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 그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함과 아울러 일본에 있어서의 현재의 무대예술(동항에서는 「현대 무대예술」 이라고 한다.)의 공연, 실연가등의 연수,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 그 진흥 및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예술 그 밖의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동법 제3조). 일본문화예술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동경에 둔다(동법 제4조).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 제5조에서 자본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①진흥회의 자본금은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된 금액으로 한다.

②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흥회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당해 출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6조 제1항의 예술문화진흥기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때에는 그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4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류정아 책임집필), 앞의 책, 718면.

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및 그 건물에 부속하는 공작물(제5항에서는 「토지 등」 이라고 한다)을 출자의 목적으로 진흥회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④진흥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 그 출자액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⑤정부가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출자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서 평가위원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평가위원 및 그 밖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政令)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 제6조는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아닌 자가 일본예술문화진흥회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감사 2인을 두고(동법 제7조 제1항), 아울러 3인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이사는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조하여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업무를 관장한다(동법 제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동법 제9조).

통칙법 제22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정령으로 정한 자는 비상근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비상근의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통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전조」란 「전조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 제10조 제1항」을 의미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명치 40년 법률 제45호) 그 밖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동법 제11조).

일본예술문화진흥회에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여 동 진흥회의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회회를 두며, 그 평의회회는 2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12조).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평의원은 동 진흥회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학식 및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문화과학대신의 인가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동 진흥회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동법 제13조 제2항). 통칙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및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평의원에 대하여 준용한다(동법 제13조 제3항). 이사장은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 제13조 제3항에 있어

준용하는 통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의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과학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3조 제4항).

2. 업무의 범위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동법 제14조).

(i)다음에 열거한 (ii) 내지 (iv) 활동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원조를 행하는 것(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ii)예술가 및 예술에 관한 단체가 행하는 예술의 창조 또는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공연, 전시등의 활동(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iii)문화시설에서 행하는 공연, 전시등의 활동 또는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는 활동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iv)위 (ii) 및 (iii)의 활동 이외에 문화에 관한 단체가 행하는 공연 및 전시, 문화재인 공예기술의 전승자 양성,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의 전승자 양성 그 밖의 문화 진흥 또는 보급을 도모하는 활동(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v)극장시설(전통예능의 공개 또는 현대 무대예술의 공연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전통예능의 공개 및 현대 무대예술의 공연을 실시하는 것(동법 제14조 제1항 제2호)

(vi)그 설치하는 시설에 관하여 전통예능의 전승자 양성 및 현대 무대예술의 실연가 그 밖의 관계자를 연수시키는 것(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

(vii)전통예능 및 현대 무대예술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이용에 제공하는 것 (동법 제14조 제1항 제4호)

(viii)동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극장시설을 전통예능의 보존 또는 진흥 또는 현대 무대예술의 진흥 또는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동법 제14조 제1항 제5호)

(ix)동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동법 제14조 제1항 제6호)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당해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극장시설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3. 예술문화진흥기금

동법 제16조에 따르면,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그 운용에 의하여 얻기 위하여 예술문화진흥기금을 마련한다.

III.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활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현(縣)교육위원회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1950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문화재보호전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68년에 문화청이 창설되면서 동 위원회는 문화청의 문화재보호부로 바뀌게 되자 모든 현은 이에 발맞추어 46개 도시 및 농촌의 행정구역 중 7개의 행정구역이 최근 순전히 문화재보호만을 취급하는 과(課)를 설치하여 완료하였다. 나머지 행정구역 중 37개 현은 사회교육과에 있는 약간의 직원을 문화재 보호 담당 직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다른 2개 현만이 문화재 담당 직원 1명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담당자들은 조사수리 및 국고보조에 관한 문제에 중앙정부로부터 온 전문가들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므로 각 현들은 문화재보호전국위원회의 설립 이후 국가시책에 따른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있다.⁴²⁾

문화진흥을 위한 행정기구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행정기구보다 늦게 발달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1966년 문부성 내의 '문화국'의 설치 및 1968년 문화청의 설치가 되면서 문화진흥을 위한 행정기구가 그 틀을 잡게 되었다. 1968년 지방예술문화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제도의 수립으로 그 영향력이 점차 지방에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몇몇 현은 자체사무실 내에 문화예술진흥업무만을 담당하는 과를 두고 있는 반면에 다른 현은 이와 같은 업무만을 담당하는 단 1명의 관리도 두지 않은 실정이다.⁴³⁾

예산액 자체도 1억 엔에서 5만 6천 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의 지시는 지방자치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의 사무실 내에 문화국 또는 문화과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업무에 관하여 교육위원회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 하면 동 위원회가 주로 교육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문화예술행정이 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현의 교육위원회가 그 사회교육과를 통하여 문화행정에 관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⁴⁴⁾

중앙정부가 문화예술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현의 교육위원회 역시 이것을 따르는

42) 위의 책, 718면.

43) 위의 책, 719면.

44) 위의 책, 719면.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가 문화 문제를 전담하는 과나 국을 둘 수 있는 예는 거의 없고, 기껏해야 사회교육과 내에 특별한 문화문제담당관을 임명하거나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문화행정을 부차적 업무로서 담당하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 있는 46개 도시 및 지방구역 중에서 단지 2개 구역만이 문화예술진흥업무만을 담당하는 과를 두고 있으며, 다른 5개 구역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특수한 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은 사회교육과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25개 현에서는 사회교육과 속에 문화진흥업을 담당하는 계를 두고 있으며, 남은 1개 현에서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용된 직원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부차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있다.⁴⁵⁾

45) 위의 책, 719면.

제3절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법제

I. 서설

유럽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하여 초국가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합"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 뿐, 그들 회원국들의 "문화"까지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다른 이웃나라와의 교류를 통하여 영향을 받아 "동화" 될 수는 있어도 어느 주도국에 의해서 "통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유럽의 문화는 일견 나라마다 엇비슷한 공통적인 유럽문화의 모습이 존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들이 모여서 큰 유럽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마치 이는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작은 개천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큰 강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적인 글로벌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럽인들이 가지는 문화적 관념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지역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적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프로축구단이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독일문화를 대표하는 옥토버페스트(Oktobertfest)는 독일국내보다도 오히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행사인데, 정작 이것은 독일의 바이에른주를 중심으로 한 뮌헨(Munchen)의 지역축제이다. 그리고 유명한 국제행사는 그 나라의 이름이 아닌, 그 지역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예컨대 베네치아비엔날레, 베를린영화제, 쾰른부르크음악축제 등이 그러하다. 유럽의 지역문화·예술이 단순히 지역에서의 행사나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외에 이를 뒷받침 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에 유럽의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법제에서의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제는 유럽국가들과 같은 대륙법국가의 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우리의 전반적인 법제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제에 대해서는 독일은 이에 관한 별도의 단행법률이 없어 우리에게 그들의 법률로부터 법적 착상을 구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은 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방과 주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정책을 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 편성의 측면에서는 같은 독법계 내에서도 오스트리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이면서도 독일보다 더욱 철저한 문화지방분권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고유한 지역문화·예술진흥법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구성이나 기술의 측면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법제가 향후 우리의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모든 주에 적용되는 연방의 예술진흥법외에도 9개의 주에서 각각 주의 문화·예술 진흥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모두 탐구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사운드 오브 뮤직"과 "모차르트"로 잘 알려진 쾰츨부르크(Salzburg)주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독일

1. 독일의 문화정책 관장 기관

독일의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은 4개 차원의 영역이 있다. 그것은 연방, 주, 도시 그리고 문화단체 등이다. 전 3자는 국가 차원의 기관이다. 후자는 국가조직에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문화사업 관련 사단이나 재단이 이에 해당한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문화국가청장(Kulturstaatsminister)과 연방의회(Bundestag)의 문화·방송위원회(Ausschuss f r Kultur und Medien)가 주된 기관이다. 그런데 문화국가청장은 다른 연방정부의 기관과 달리 독립된 장관직이 아니라, 연방총리실 산하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문화와 방송에 관한 소관업무를 위탁받아 행사한다.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독립된 문화부가 따로 없고(따라서 문화부장관도 없다) 연방총리실에 예속된 「문화·방송에 관한 수임청(Beauftragter für Kultur und Medien)⁴⁶⁾」이라고 불리는 기관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방총리를 문화부장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연방총리는 실질적으로 문화국가청장(Kulturstaatsminister)에게 문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관하고 있으며, 수임청의 사무실도 총리실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독일연방의 문화사업의 권력핵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문화·방송위원회(Ausschuss f r Kultur und Medien)는 문화 분야에 관련한 입법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동 위원회는 모두 연방의회의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소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개 문화관련 현안에 대해서 당적을 초월하여 의견의 일치력을 보이며,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외교부 산하에 대외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문화부서(Ausw rtiges Amt, Kulturabteilung)」가 있고,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문화양케이트위원회(Enquetekommission Kultur in Deutschland)」가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이를테면,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험제의 도입문제(연방노동부 관할), 저작권법상의 문제(연방법무부 관할) 또는 디자인, 문화경제, 자유업 등의 문제(연방경제부 관할) 등에 대해서 폭넓은 문화정책을 기안하기 위한 의견이나

46) 이것이 정식 명칭이다.

어론 등을 취합한다. 연방의회의 문화·방송위원회가 연방의회 의원들로만 구성된 기관이라면, 문화앙케이트위원회는 의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각계의 문화전문가들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문화앙케이트위원회는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지 그 자체가 법안을 제출할 수는 없고 법안은 문화·방송위원회가 주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앙케이트위원회는 독일의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첨예한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의를 하고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독일 문화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은 국가차원에서 연방-주-도시를 연결하는 세 기관이 상호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연계되어 있다. 즉 각각의 도시나 군·읍 혹은 각각의 주마다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지방마다 독자적인 문화사업을 펼치는 것은 그들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Köln시는 20세기 독일에서 가장 각광받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루드비히 박물관(Museum Ludwig)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드레스든(Dresden) 오페라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작센(Sachsen)주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뮌헨 필하모니(Münchener Philhamoniker)는 바이에른 주정부가 아니라 뮌헨시에서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적인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주와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 몫이다. 연간 문화 관련 지출예산 약 80억 유로(한화 약 13조)의 90%는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단지 10%에 한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독일의 문화국가청장(Kulturstaatsminister)이 외국이나 유럽연합국가에 방문할 때에는 대개 주정부의 문화부장관(Kulturminister)이 동석한다. 이러한 장면은 독일의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는 파악하기 힘든 일이다. 즉 독일에서의 국가적인 문화정책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혹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주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다.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6개 주마다 각각의 문화부장관(Kulturstaatsminister)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꼭 그러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몇몇 주는 주지사가 문화부장관직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슬레스비히홀슈타인주 및 베를린이 그러하다. 어쨌든 16명의 문화부장관들로 구성된 조직체가 독일의 문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문화공무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독일의 최근 문화동향에 관한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다른 부서의 주장관들도 그러한 협의조직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활동은 다르다. 즉 다른 부서의 경우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위한 조직력이 강하지만, 문화부의 경우에는 각 지방마다 독자적인 문화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문화부장관들로 구성된 문화위원회에서 투표로 현안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각 지방마다 자율적인 문화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보다 지방정부의 문화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독일에는 14,4000개의 시·군·읍·면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의 문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03년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61억 유로(한화 약 9조 8천억 원)를 지역의 문화진흥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한다. 이들 중 53%는 중·대도시에서 문화진흥사업(특히 공연장, 박물관, 오케스트라, 중앙도서관 등)을 위해서 지출하였고, 33%는 중·소도시에서 소규모도서관, 음악학교, 예술학교 등에 지원하였다. 14%는 지역단위의 공동단체에 지원하였다.

국가적인 차원의 조직(연방, 주, 도시)⁴⁷⁾외에도 독일의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제4의 기관은 문화단체이다. 이들은 문화단체, 문화기관, 문화조직 등의 이름으로 기능상 전체독일문화정책을 엮어내는 정부의 대응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상당부분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독일문화협의회(Deutscher Kulturrat)가 있다. 독일문화협의회는 소독일에 걸쳐 문화와 방송에 관해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일조직의 설립을 목적으로 1981년에 결성된 단체로서, 1995년에는 공식사단으로 발전하였다. 협의회는 여러 분야의 예술단체를 아우르는 상급단체로서, 그 아래에 독일음악협회, 전시예술협회, 독일문인협회, 예술협회, 건축문화협회, 디자인지부, 영화·방송지부, 사회문화/문화교육협회 등의 산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47)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연방, 주, 도시(시·군·읍·면)의 문화정책이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이유로 삼위일체(Drei-Einigkeit)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연방 차원의 지원

(1) 개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은 기본적으로 문화정책에 관한 한 중앙정부(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지 않고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이다. 이것은 연방주의를 취하는 독일의 국가체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일기본법(헌법) 제5조 3항 전단은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예술의 자유(Kunstfreiheit)는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이 규정하는 예술의 자유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국민의 예술진흥청구권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⁴⁸⁾ 또한 독일기본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의 사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에 관해서도 지방권능의 우선원칙에 따라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펼치게 되므로 연방(Bund)의 역할이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정책 업무가 결코 적지는 않다. 연방차원의 문화정책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특정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둘째, 음악·문학 등 국가적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셋째, 통독 후 새로운 수도(즉 Berlin)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넷째, 통독 후 새로 편입된 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하에 이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2)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연방정부의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시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재단을 통한 지원

둘째, 박물관 및 전시회의 지원

셋째, 도서관과 문서고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가) 재단을 통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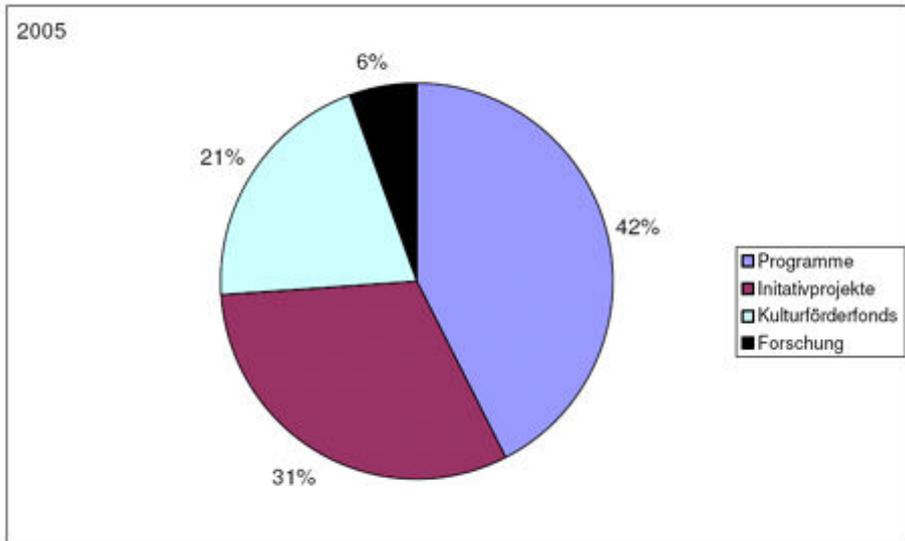
연방정부는 몇 개의 주요한 재단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48) Pernice-Grundgesetz Kommentar, Bd. I, Rz. 47, Art. 5 III.

의미를 같은 문화사업에 진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방문화재단(Kulturstiftung des Bundes⁴⁹)이다. 연방문화재단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2002년 설립되었고, 문화·미디어 수입청의 관할에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연방문화재단은 연방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예술과 문화를 진흥한다. 재단은 특히 국제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 또한 재단은 자체적인 중점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문예사업을 펼치기도 한다.⁵⁰ 그 외에도 연방문화재단은 다섯 개의 독자적인 문예기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예술기금」, 「독일문학기금」, 「독일번역기금」, 「사회문화기금」 및 「표현예술기금」 등이 그것이다.

연방문화재단은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3,500만 유로(한화 약 560억 원)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의 사용내역과 비율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림 해설] 2005년 전체사업 예산 중, 42%는 재단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지원, 31%는 지원자의 제안사업에 지원, 21%는 문화진흥기금에 지원, 6%는 연구비에 지원함.

49) 웹사이트 <http://www.kulturstiftung-des-bundes.de/> (2008년 7월 15일 최종방문)

50) 2002년 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술과 국가", "중앙유럽과 동유럽", "독일통일"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바 있고 최근에는 "소통의 예술", "미래의 일" 등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그 외 연방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일정부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지원사업을 하는 재단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Stiftung Preßische Kulturbesitz), 「베를린-브란덴부룩 프로이센 궁정·정원 재단」(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 Berlin Brandenburg), 「바이마르 고전 재단」(Klassik Stiftung Weimar) 등이 그것이다.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은 연방과 모든 주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데, 그 중 3/4은 연방정부가 분담한다. 이 재단의 주요업무는 전쟁 중 파괴된 베를린의 건물과 박물관과 국립도서관 등을 재건·보수하고 베를린의 명소인 박물관섬(Museumsinsel)과 언터덴린덴거리(Unter den Linden)을 정비·보수하는 것이다.

베를린-브란덴부룩 프로이센 궁정·정원 재단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룩주의 궁정과 정원, 특히 포츠담의 궁전(상수시궁전)을 정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재단은 연방과 베를린-브란덴부룩주 사이의 협정을 통하여 분담액을 정하였는데, 전체 예산 중 42%는 연방이 부담한다.

바이마르 고전 재단은 괴테·실러·니체 등의 생가 등을 보존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단으로, 재단은 연방과 튀링엔 및 바이마르시가 함께 재정에 참여한다. 연방은 그중 43%의 재정예산을 부담한다.

(나) 박물관 및 전시장의 지원

연방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Berlin)과 과거 수도 본(Bonn)에 소재한 3개의 박물관과 2개의 전시회장을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의 독일역사박물관(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Berlin)

·본의 독일연방공화국역사관(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베를린의 유대인박물관(Jüdisches Museum, Berlin)

·베를린의 마틴그로피우스바우 공연장(Martin-Gropius-Bau, Berlin)

·본의 독일연방공화국 예술전시장(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등이 그것인데, 이들 박물관·전시장 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한편 연방헌법 제91조⁵¹⁾에 근거하여 연방과 주는 공동진흥연구 협약을 맺고 이른

51) 독일연방기본법 제91b조 [교육계획과 학술연구] 연방과 주는 협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과 초지역적 중대성을 띤 학술적

바 "블루리스트(Blaue Liste)"에 해당하는 지역소재박물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실행협약에 따라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 뮌헨의 독일박물관(Deutsches Museum, München)
- 뉘른베르크의 게르만민족박물관(Germanisches Nationalmuseum, Nürnberg)
- 브레머하펜의 독일선박박물관(Deutsches Schiffahrtmuseum, Bremerhaven)
- 보쿰의 독일광산박물관(Deutsches Bergbaumuseum, Bochum)
- 본의 알렉산더 대왕 동물연구소 및 박물관(Zoologisches Forschungsinstitut und Museum Alexander König Bonn, Bonn)
- 마인쯔의 로마-게르만 중앙박물관(Römisch-Germanisches Zentralmuseum, Mainz)등이다.

(다) 도서관과 문서고의 지원

독일국립박물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과 연방문서고(Bundesarchiv)는 전적으로 연방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표적 기관이다. 그 외에도 연방은 이들 기관이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서고와 도서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즉 문화재단을 통한 우회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예컨대 라이쁘찌히의 바흐문서고(Bach-Archiv in Leipzig) 등에 대한 지원 또는 바이마르 고전-예술품수집재단의 재정지원을 통한 괴테와 실러에 대한 문서보존지원 사업 등이 그러하다.

(3) 국가적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

앞서 본 내용이 연방정부가 문화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관"에 지원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어떠한 "문화콘텐츠"의 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문화재와 같은 물적인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문학, 기타 조형예술이나 표현예술 등에 대해서도 진흥사업을 펴고 있다.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추진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음악의 경우, 연방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특정한 기관, 조직이나 프로젝트 등을 지원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진흥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본(Bonn)에 있는 베토벤하우스(Beethovenhaus), 라이프찌히에 있는 바하문서고(Bach-Archiv)를 지원함으로써 바로크시대의 음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름슈타트의 국제음악학교나 「독일춤마당」(Tanzplattform)이라는 공연행사를 지원함으로써, 현대음악에 대해서도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학에 대해서도 연방정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흥책을 펴고 있다. 하나는 괴테·실러로 대변되는 독일의 문학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독일문학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이다.

조형예술(Bildende Kuns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의 진흥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흥사업을 펴고 있다. 다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주정부나 지역공동체의 몫이므로 연방지원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1987년 설립된 주문화재단(Kulturstiftung der Länder)에 기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진흥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화, 연극, 뮤지컬 등 표현예술(Darstellende Kunst)에 대해서도 연방정부는 사단법인 표현예술협회(Darstellende Künste e.V.)의 기금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협회에 소속한 다양한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해서 간접적인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기념물에 대한 보존사업은 일차적으로 주정부의 소관사항이지만, 중요한 국가적 기념물의 보존은 연방정부의 중점업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와 지역공동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기념물보호를 위한 독일국립위원회」(Deutsche Nationalkomitee für Denkmalschutz: 약칭 DNK)를 결성하여 기념물보호사업을 진흥하고 있다.

(4) 수도 Berlin에 대한 지원사업

1999년 통독이래로 베를린은 독일의 새로운 수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베를린은 독일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는 높은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했다. 그래서 통독이후에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베를린재건사업에 투입되었지만, 특히 2003년 12월에 연방정부와 베를린주는 이른바 수도문화협정(Hauptstadtkulturvertrag)을 체결하여, 베를린의 문화 재건 및 양성사업에 연방정부

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정에 따라 이를테면 「독일역사박물관(Deutsche Historische Museum)」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베를린에 주는 선물로서 100%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고,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박물관」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를린영화제」 등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합의한 수도문화협정에는 새로이 수도 베를린의 문화중심지인 운터덴린덴(Unter dem Linden)지구에 대한 정비 및 보존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문화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5) 구 동독지역 주에 대한 문화 지원사업

통독 후 구 동독지역에 있는 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합해지면서⁵²⁾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문화적인 재건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지역의 문화재건사업은 해당 주정부나 지역공동체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독지역은 기본적인 사회기간시설의 재건에만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이 문화적 재건사업에 힘쓸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문화재건사업을 위해서 연방정부는 통독 후 2007년 8월까지 약 9억 유로(한화 약 1조 4천 5백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3. 지방(주/도시) 차원

연방국가체제를 취하는 독일은 문화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방국가체제는 독일의 오랜 역사적 산물로서, 그에 각 주 혹은 지역은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보급하는 것도 지방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를 이른바 주의 문화고권(Kulturhoheit der L nder)라고 한다.

독일기본법(헌법) 제5조 3항 전단은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예술의 자유(Kunstfreiheit)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독일기본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의 사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조항을 결합하여 문화진흥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국가의 문화진흥에 관한 권리·의무

52) 이들 주는 Brandenburg주, Mecklenburg-Vorpommern주, Sachsen주, Sachsen-Anhalt주, Thüringen주 등이다. Berlin은 통일되기 전에도 서독령과 동독령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통독 후 양분된 도시가 합해지게 되었다.

는 일차적으로 지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주의체제에서 주의 독자적 국가성(Eigenstaatlichkeit der L nder)의 핵심은 교육기관과 대학을 포함한 문화와 관련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곧 주의 문화고권(Kulturhoheit) 또는 우선적 문화권한(vorrangige Kulturkompetenz)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고유한 주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헌법에 문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수도 베를린은 주헌법 제20조제2항에서 "주는 문화적 삶을 보호하고 진흥한다"⁵³⁾고 하고, 니더작센주(Niedersachsen)는 니더작센주 헌법 제6조에서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군은 예술, 문화 및 스포츠를 보호하고 증진한다"⁵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도 이와 유사한 표현의 헌법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지방에서는 주정부뿐만 아니라, 그 하위지방자치단체인 시(St dte)나 군(Landkreise)도 독자적인 문화정책사업을 펼 수 있다. 그 근거는 독일기본법 제28조 2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상급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률적 과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권을 가진다. 자치의 보장은 또한 독자적인 재정적 책임의 기초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주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독자적인 문화진흥사업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6개 주를 비롯한 각 주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진흥하는 예술기관 및 단체들을 일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단체는 물론 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된 예산지원을 받지만, 연방정부로부터도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들이 많다. 즉 문화진흥이 지방의 관할에 속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흥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은 연방과 지방이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느 기관에 얼마의 분담으로 할 것이냐는 연방과 지방 사이의 개별협정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

53) Verfassung von Berlin vom 23. November 1995 Artikel 20 Abs. 2: Das Land schützt und fördert das kulturelle Leben.

54) Niedersächsische Verfassung vom 19. Mai. 1993 Artikel 6: Das Land, die Gemeinden und die Landkreise schützen und fördern Kunst, kultur und Sport.



기관/단체	주	도시
Adalbert Stifter Verein	Bayern	München
Akademie der Künste	Berlin	Berlin
Alexander von Humboldt – Stiftung	Nordrhein – Westfalen	Bonn
AlliiertenMuseum	Berlin	Berlin
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Chorverbände e.V.	Niedersachsen	Wolfenbüttel
Arbeitsgemeinschaft Friedhof und Denkmal e.V. – Stiftung Zentralinstitut und Museum für Sepulkralkultur	Hessen	Kassel
Arbeitsgemeinschaft Literarischer Gesellschaften und Gedenkstätten e.V.	Berlin	Berlin
Arbeitskreis für Jugendliteratur e.V.	Bayern	München
Arbeitskreis selbständiger Kultur – Institute e.V. (AsKI)	Nordrhein – Westfalen	Bonn
Atelier Otto Niemeyer – Holstein	Mecklenburg – Vorpommern	Koserow
Bach – Archiv Leipzig	Sachsen	Leipzig
Bad Hersfelder Festspiele	Hessen	BadHersfeld
Bauhaus – Archiv – Museum für Gestaltung	Berlin	Berlin
Beethoven – Haus	Nordrhein – Westfalen	Bonn
Berlin – Brandenburgisches Institut für Deutsch – französische Zusammenarbeit in Europa – Stiftung Genshagen	Brandenburg	Genshagen
Berliner Festspiele	Berlin	Berlin
Berliner Musikinstrumenten – Museum	Berlin	Berlin
Brandenburger Kleist – Ausgabe (BKA)	Baden – Württemberg	Heidelberg
Bund Deutscher Amateurtheater e.V.	Baden – Württemberg	Heidenheim
Bund Deutscher Liebhaberorchester e.V.	Sachsen	Dresden
Bundesakademie für musikalische Jugendbildung e.V.	Baden – Württemberg	Trossingen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 – Organisationen e.V. (BAGSO)	Nordrhein – Westfalen	Bonn
Bundesinstitut für Kultur und Geschichte der Deutschen im stlichen Europa	Niedersachsen	Oldenburg
Bundeskanzler – Willy – Brandt – Stiftung	Berlin	Berlin
Bundesverband Bildender Künstlerinnen und Künstler	Nordrhein – Westfalen	Bonn
Bundesverband Freier Theater	Nordrhein – Westfalen	Dortmund
Bundesvereinigung Deutscher Orchesterverbände	Baden – Württemberg	Trossingen
Bundesvereinigung Kulturelle Jugendbildung (BKJ)	Nordrhein – Westfalen	Remscheid
Bundesweites Schülerfilm – und Videozentrum e.V.	Niedersachsen	Hannover
Casa di Goethe		Rom
Dachverband Altenkultur e.V. – Geschäftsstelle Leipzig	Sachsen	Leipzig

Deutsch-Deutsches Museum Mödlareuth	Bayern	Tpen-Mdlareuth
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 (DFJW)	Berlin	Berlin
Deutsch-Polnisches Jugendwerk (DPJW)	Brandenburg	Potsdam
Deutsch-Russisches Forum e.V.	Berlin	Berlin
Deutsche Akademie für Sprache und Dichtung	Hessen	Darmstadt
Deutsche Arbeitsschutzausstellung	Nordrhein-Westfalen	Dortmund
Deutsche Kinemathek – Museum für Film- und Fernsehen	Berlin	Berlin
Deutsche Schillergesellschaft	Baden-Württemberg	Marbach
Deutsche Stiftung Denkmalschutz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 Welle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r Bühnenverein – Bundesverband der Theater und Orchester	Nordrhein-Westfalen	Köln
Deutscher Kulturrat e.V.	Berlin	Berlin
Deutscher Literaturfonds e.V.	Hessen	Darmstadt
Deutscher Musikrat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r Musikrat – Deutsches Musikinformationszentrum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r Presserat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r Übersetzerfonds e.V.	Berlin	Berlin
Deutsches Bergbau-Museum Bochum	Nordrhein-Westfalen	Bochum
Deutsches Filminstitut – DIF	Hessen	Frankfurt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Berlin	Berlin	Berlin
Deutsches Kulturforum östliches Europa e.V.	Brandenburg	Potsdam
Deutsches Meeresmuseum – Museum für Meereskunde und Fischerei. Aquarium	Mecklenburg-Vorpommern	Stralsund
Deutsches Museum von Meisterwerken der Naturwissenschaft und Technik	Bayern	München
Deutsches Nationalkomitee des Internationalen Museumsrats ICOM	Berlin	Berlin
Deutsches Studienzentrum in Venedig e.V. / Centro tedesco di studi veneziani		Venezia
Dokumentations- und Kulturzentrum Deutscher Sinti und Roma	Baden-Württemberg	Heidelberg
Eichendorff-Gesellschaft e.V.	Nordrhein-Westfalen	Ratingen-Hösel
Ernst Barlach Stiftung Güstrow	Mecklenburg-Vorpommern	Güstrow
Europäische Theaterakademie "Konrad Ekhof" GmbH Hamburg – Theatertreffen Deutschsprachiger Schauspielstudierender	Mecklenburg-Vorpommern	Rostock
Filmförderungsanstalt (FFA)	Berlin	Berlin

Filmische Langzeitbeobachtung	Berlin	Berlin
Fonds für Darstellende Künste e.V.	Nordrhein-Westfalen	Bonn
Fonds Soziokultur e.V.	Nordrhein-Westfalen	Bonn
Franckesche Stiftungen zu Halle	Sachsen-Anhalt	Halle
Freier Deutscher Autorenverband	Nordrhein-Westfalen	Schwerte
Freies Deutsches Hochstift – Frankfurter Goethe Museum	Hessen	Frankfurt am Main
Freies Werkstatt Theater Köln	Nordrhein-Westfalen	Köln
Freunde der Deutschen Kinemathek e.V. / Kino Arsenal 1&2	Berlin	Berlin
Friesenrat Sektion Nord e.V.	Schleswig-Holstein	Niebüll
Fritz Bauer Institut – Studien- und Dokumentationszentrum zur Geschichte und Wirkung des Holocaust	Hessen	Frankfurt
Fördergesellschaft Kulturelle Bildung e.V.	Nordrhein-Westfalen	Bonn
Galerie für Zeitgenössische Kunst Leipzig	Sachsen	Leipzig
Gandersheimer Domfestspiele	Niedersachsen	Bad Gandersheim
Gedenkstätte Deutscher Widerstand	Berlin	Berlin
Gedenkstätte Plötzensee	Berlin	Berlin
Geheimes Staatsarchiv Preußischer Kulturbesitz	Berlin	Berlin
German Films Service + Marketing GmbH	Bayern	München
Germanisches Nationalmuseum	Bayern	Nürnberg
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e e. V.	Hessen	Wiesbaden
Gesellschaft für Medienpädagogik und Kommunikationskultur (GMK)	Nordrhein-Westfalen	Bielefeld
Goethe-Gesellschaft in Weimar e.V.	Thüringen	Weimar
Goethe-Museum Düsseldorf / Anton-und-Katharina-Kippenberg-Stiftung	Nordrhein-Westfalen	Düsseldorf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Berlin
Haus der Wannsee-Konferenz – Gedenk- und Bildungsstätte	Berlin	Berlin
Heinrich-Schliemann-Museum Ankershagen	Mecklenburg-Vorpommern	Ankershagen
Herder-Institut e.V. Marburg	Hessen	Marburg
Ibero-Amerikanisches Institut –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Berlin	Berlin
ICOMOS – Deutsches Nationalkomitee	Bayern	München
Institut für Begabungsforschung und Begabtenförderung in der Musik (IBFF)	Nordrhein-Westfalen	Paderborn
Institut für deutsche Kultur und Geschichte Südosteuropas e.V. an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IKGS)	Bayern	München
Institut für Deutschland- und Osteuropaforschung	Niedersachsen	Göttingen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des Deut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e.V. (IIZ/DVV)	Nordrhein-Westfalen	Bonn
Institut für Kultur und Geschichte der Deutschen in Nordosteuropa (IKGN)	Niedersachsen	Lüneburg
Institut für Kulturpolitik	Nordrhein-Westfalen	Bonn
Internationale Gesellschaft der Bildenden Künste – Deutsches Nationalkomitee	Berlin	Berlin
Internationale Jugendbibliothek	Bayern	München
Internationales Theaterinstitut, Zentrum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Berlin
InWEnt – 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gGmbH	Nordrhein-Westfalen	Bonn
Jeunesses Musicales Deutschland	Baden-Württemberg	Weikersheim
JFF – Institut für Medienpädagogik in Forschung und Praxis	Bayern	München
Junge Deutsche Philharmonie	Hessen	Frankfurt
Jüdisches Museum Berlin	Berlin	Berlin
Kinder- und Jugendtheaterzentrum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ssen	Frankfurt / Main
Kleist-Museum Frankfurt (Oder)	Brandenburg	Frankfurt (Oder)
Kompetenzzentrum Frauen in Informationsgesellschaft und Technologie	Nordrhein-Westfalen	Bielefeld
Koordinierungsstelle für Kulturgutverluste – Lost Art Internet Data Base	Sachsen-Anhalt	Magdeburg
Kulturpolitische Gesellschaft e.V.	Nordrhein-Westfalen	Bonn
Kulturstiftung des Bundes	Sachsen-Anhalt	Halle an der Saale
Kulturstiftung DessauWörlitz	Sachsen-Anhalt	Dessau-Roßlau
Kulturzentrum Ostpreussen	Bayern	Ellingen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ordrhein-Westfalen	Bonn
Kunstforum Ostdeutsche Galerie	Bayern	Regensburg
Kunsthalle Bremen	Bremen	Bremen
Kunsthalle in Emden	Niedersachsen	Emden
Kurt-Wolff-Stiftung	Sachsen	Leipzig
Lessing-Museum Kamenz	Sachsen	Kamenz
Martin-Gropius-Bau	Berlin	Berlin
Museum für schlesische Landeskunde im Haus Schlesien	Nordrhein-Westfalen	Königswinter-H eisterbacherrott
Orden Pour le mérite		Bonn
Ostpreußisches Landesmuseum	Niedersachsen	Lüneburg
Otto Benecke Stiftung e.V.	Nordrhein-Westfalen	Bonn
Otto-von-Bismarck-Stiftung	Schleswig-Holstein	Friedrichsruh

Panorama Museum	Thüringen	Bad Frankenhausen
Pommersches Landesmuseum	Mecklenburg-Vorpommern	Greifswald
Ruhrfestspiele Recklinghausen – Europäisches Festival	Nordrhein-Westfalen	Recklinghausen
Rundfunk-Orchester und Chöre GmbH Berlin (ROC Berlin)	Berlin	Berlin
Sammlung industrielle Gestaltung	Berlin	Berlin
Schlesisches Museum zu Görlitz	Sachsen	Görlitz
Siebenbürgen-Institut	Baden-Württemberg	Gundelsheim
Siebenbürgisches Museum Gundelsheim e.V.	Baden-Württemberg	Gundelsheim
Staatliches Institut für Musikforschung – Preußischer Kulturbesitz mit Musikinstrumenten-Museum	Berlin	Berlin
Staatsbibliothek zu Berlin – Preußischer Kulturbesitz	Berlin	Berlin
Staendige Konferenz Mitteldeutscher Barockmusik e.V.	Sachsen-Anhalt	Blankenburg (Harz)
Stiftung Bauhaus Dessau	Sachsen-Anhalt	Dessau-Roßlau
Stiftung Brandenburgische Gedenkstätten	Brandenburg	Oranienburg
Stiftung Buchkunst	Hessen	Frankfurt am Main
Stiftung Bundeskanzler-Adenauer-Haus	Nordrhein-Westfalen	Bad Honnef
Stiftung Bundespräsident-Theodor-Heuss-Haus	Baden-Württemberg	Stuttgart
Stiftung Deutsche Kinemathek – Museum für Film und Fernsehen	Berlin	Berlin
Stiftung Donauschwäbisches Zentralmuseum	Baden-Württemberg	Ulm
Stiftung für das sorbische Volk	Sachsen	Bautzen
Stiftung Fürst-Pückler-Museum – Park und Schloss Branitz	Brandenburg	Cottbus
Stiftung Fürst-Pückler-Park Bad Muskau	Sachsen	Bad Muskau
Stiftung Gedenkstätte Berlin-Hohenschönhausen	Berlin	Berlin
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ordrhein-Westfalen	Bonn
Stiftung Kunstfonds	Nordrhein-Westfalen	Bonn
Stiftung Luthergedenkstätten in Sachsen-Anhalt	Sachsen-Anhalt	Lutherstadt Wittenberg
Stiftung Martin-Opitz-Bibliothek	Nordrhein-Westfalen	Herne
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 Berlin-Brandenburg	Brandenburg	Potsdam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Berlin	Berlin
Stiftung Reichspräsident-Friedrich-Ebert-Gedenkstätte	Baden-Württemberg	Heidelberg
Stiftung Sächsische Gedenkstätten zur Erinnerung an die Opfer politischer Gewaltherrschaft	Sachsen	Dresden
Stiftung Topographie des Terrors	Berlin	Berlin

Stiftung Weimarer Klassik und Kunstsammlungen (Klassik Stiftung Weimar)	Thüringen	Weimar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Berlin	Berlin
Tandem – Koordinierungszentrum deutsch-tschechischer Jugendaustausch	Bayern	Regensburg
Tolstoi Hilfs- und Kulturwerk e.V.	Bayern	München
Verband der Gemeinschaften der Künstlerinnen und Kunstfreunde e.V. (GEDOK)	Nordrhein-Westfalen	Wuppertal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e.V.	Nordrhein-Westfalen	Bonn
Verband deutscher Schriftsteller in der ver.di	Berlin	Berlin
Vision Kino gGmbH – Netzwerk für Film- und Medienkompetenz	Brandenburg	Potsdam
Wartburg-Stiftung Eisenach	Thüringen	Eisenach
Weltkulturerbe Völklinger Hütte – Europäisches Zentrum für Kunst und Industriekultur	Saarland	Völklingen
Westpreußisches Landesmuseum	Nordrhein-Westfalen	Münster
Zentralrat Deutscher Sinti und Roma e.V.	Baden-Württemberg	Heidelberg
Zoologisches Forschungsinstitut und Museum Alexander Koenig	Nordrhein-Westfalen	Bonn

기관/단체	주	도시
Adalbert Stifter Verein	Bayern	München
Akademie der Künste	Berlin	Berlin
Alexander von Humboldt - Stiftung	Nordrhein-Westfalen	Bonn
AlliiertenMuseum	Berlin	Berlin
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Chorverbände e.V.	Niedersachsen	Wolfenbüttel
Arbeitsgemeinschaft Friedhof und Denkmal e.V. - Stiftung Zentralinstitut und Museum für Sepulkralkultur	Hessen	Kassel
Arbeitsgemeinschaft Literarischer Gesellschaften und Gedenkstätten e.V.	Berlin	Berlin
Arbeitskreis für Jugendliteratur e.V.	Bayern	München
Arbeitskreis selbständiger Kultur-Institute e.V. (AsKI)	Nordrhein-Westfalen	Bonn
Atelier Otto Niemeyer-Holstein	Mecklenburg-Vorpommern	Koserow
Bach-Archiv Leipzig	Sachsen	Leipzig
Bad Hersfelder Festspiele	Hessen	Bad Hersfeld
Bauhaus-Archiv - Museum für Gestaltung	Berlin	Berlin
Beethoven-Haus	Nordrhein-Westfalen	Bonn
Berlin-Brandenburgisches Institut für Deutsch-französische Zusammenarbeit in Europa - Stiftung Genshagen	Brandenburg	Genshagen
Berliner Festspiele	Berlin	Berlin
Berliner Musikinstrumenten-Museum	Berlin	Berlin
Brandenburger Kleist-Ausgabe (BKA)	Baden-Württemberg	Heidelberg
Bund Deutscher Amateurtheater e.V.	Baden-Württemberg	Heidenheim
Bund Deutscher Liebhaberorchester e.V.	Sachsen	Dresden
Bundesakademie für musikalische Jugendbildung e.V.	Baden-Württemberg	Trossingen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Organisationen e.V. (BAGSO)	Nordrhein-Westfalen	Bonn
Bundesinstitut für Kultur und Geschichte der Deutschen im östlichen Europa	Niedersachsen	Oldenburg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Berlin	Berlin
Bundesverband Bildender Künstlerinnen und Künstler	Nordrhein-Westfalen	Bonn
Bundesverband Freier Theater	Nordrhein-Westfalen	Dortmund
Bundesvereinigung Deutscher Orchesterverbände	Baden-Württemberg	Trossingen
Bundesvereinigung Kulturelle Jugendbildung (BKJ)	Nordrhein-Westfalen	Remscheid
Bundesweites Schülerfilm- und Videozentrum e.V.	Niedersachsen	Hannover
Casa di Goethe		Rom
Dachverband Altenkultur e.V. - Geschäftsstelle Leipzig	Sachsen	Leipzig

Deutsch-Deutsches Museum Mödlareuth	Bayern	Töpen-Mödlareuth
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 (DFJW)	Berlin	Berlin
Deutsch-Polnisches Jugendwerk (DPJW)	Brandenburg	Potsdam
Deutsch-Russisches Forum e.V.	Berlin	Berlin
Deutsche Akademie für Sprache und Dichtung	Hessen	Darmstadt
Deutsche Arbeitsschutzausstellung	Nordrhein-Westfalen	Dortmund
Deutsche Kinemathek – Museum für Film- und Fernsehen	Berlin	Berlin
Deutsche Schillergesellschaft	Baden-Württemberg	Marbach
Deutsche Stiftung Denkmalschutz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 Welle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r Bühnenverein – Bundesverband der Theater und Orchester	Nordrhein-Westfalen	Köln
Deutscher Kulturrat e.V.	Berlin	Berlin
Deutscher Literaturfonds e.V.	Hessen	Darmstadt
Deutscher Musikrat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r Musikrat – Deutsches Musikinformationszentrum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r Presserat	Nordrhein-Westfalen	Bonn
Deutscher Übersetzerfonds e.V.	Berlin	Berlin
Deutsches Bergbau-Museum Bochum	Nordrhein-Westfalen	Bochum
Deutsches Filminstitut – DIF	Hessen	Frankfurt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Berlin	Berlin	Berlin
Deutsches Kulturforum östliches Europa e.V.	Brandenburg	Potsdam
Deutsches Meeresmuseum – Museum für Meereskunde und Fischerei. Aquarium	Mecklenburg-Vorpommern	Stralsund
Deutsches Museum von Meisterwerken der Naturwissenschaft und Technik	Bayern	München
Deutsches Nationalkomitee des Internationalen Museumsrats ICOM	Berlin	Berlin
Deutsches Studienzentrum in Venedig e.V. / Centro tedesco di studi veneziani		Venezia
Dokumentations- und Kulturzentrum Deutscher Sinti und Roma	Baden-Württemberg	Heidelberg
Eichendorff-Gesellschaft e.V.	Nordrhein-Westfalen	Ratingen-Hösel
Ernst Barlach Stiftung Güstrow	Mecklenburg-Vorpommern	Güstrow
Europäische Theaterakademie "Konrad Elkhof" GmbH Hamburg – Theatertreffen Deutschsprachiger Schauspielstudierender	Mecklenburg-Vorpommern	Rostock
Filmförderungsanstalt (FFA)	Berlin	Berlin
Filmische Langzeitbeobachtung	Berlin	Berlin
Fonds für Darstellende Künste e.V.	Nordrhein-Westfalen	Bonn

Fonds Soziokultur e.V.	Nordrhein-Westfalen	Bonn
Franckesche Stiftungen zu Halle	Sachsen-Anhalt	Halle
Freier Deutscher Autorenverband	Nordrhein-Westfalen	Schwerte
Freies Deutsches Hochstift – Frankfurter Goethe Museum	Hessen	Frankfurt am Main
Freies Werkstatt Theater Köln	Nordrhein-Westfalen	Köln
Freunde der Deutschen Kinemathek e.V. / Kino Arsenal 1&2	Berlin	Berlin
Friesenrat Sektion Nord e.V.	Schleswig-Holstein	Niebüll
Fritz Bauer Institut – Studien- und Dokumentationszentrum zur Geschichte und Wirkung des Holocaust	Hessen	Frankfurt
Fördergesellschaft Kulturelle Bildung e.V.	Nordrhein-Westfalen	Bonn
Galerie für Zeitgenössische Kunst Leipzig	Sachsen	Leipzig
Gandersheimer Domfestspiele	Niedersachsen	Bad Gandersheim
Gedenkstätte Deutscher Widerstand	Berlin	Berlin
Gedenkstätte Plötzensee	Berlin	Berlin
Geheimes Staatsarchiv Preußischer Kulturbesitz	Berlin	Berlin
German Films Service + Marketing GmbH	Bayern	München
Germanisches Nationalmuseum	Bayern	Nürnberg
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e e. V.	Hessen	Wiesbaden
Gesellschaft für Medienpädagogik und Kommunikationskultur (GMK)	Nordrhein-Westfalen	Bielefeld
Goethe-Gesellschaft in Weimar e.V.	Thüringen	Weimar
Goethe-Museum Düsseldorf / Anton-und-Katharina-Kippenberg-Stiftung	Nordrhein-Westfalen	Düsseldorf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Berlin
Haus der Wannsee-Konferenz – Gedenk- und Bildungsstätte	Berlin	Berlin
Heinrich-Schliemann-Museum Ankershagen	Mecklenburg-Vorpommern	Ankershagen
Herder-Institut e.V. Marburg	Hessen	Marburg
Ibero-Amerikanisches Institut –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Berlin	Berlin
ICOMOS – Deutsches Nationalkomitee	Bayern	München
Institut für Begabungsforschung und Begabtenförderung in der Musik (IBFF)	Nordrhein-Westfalen	Paderborn
Institut für deutsche Kultur und Geschichte Südosteuropas e.V. an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IKGS)	Bayern	München
Institut für Deutschland- und Osteuropaforschung	Niedersachsen	Göttingen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des Deut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e.V. (IIZ/DVV)	Nordrhein-Westfalen	Bonn
Institut für Kultur und Geschichte der Deutschen in Nordosteuropa (IKGN)	Niedersachsen	Lüneburg

Institut für Kulturpolitik	Nordrhein-Westfalen	Bonn
Internationale Gesellschaft der Bildenden Künste – Deutsches Nationalkomitee	Berlin	Berlin
Internationale Jugendbibliothek	Bayern	München
Internationales Theaterinstitut, Zentrum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Berlin
InWEnt – 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gGmbH	Nordrhein-Westfalen	Bonn
Jeunes Musicales Deutschland	Baden-Württemberg	Weikersheim
JFF – Institut für Medienpädagogik in Forschung und Praxis	Bayern	München
Junge Deutsche Philharmonie	Hessen	Frankfurt
Jüdisches Museum Berlin	Berlin	Berlin
Kinder- und Jugendtheaterzentrum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ssen	Frankfurt / Main
Kleist-Museum Frankfurt (Oder)	Brandenburg	Frankfurt (Oder)
Kompetenzzentrum Frauen in Informationsgesellschaft und Technologie	Nordrhein-Westfalen	Bielefeld
Koordinierungsstelle für Kulturgutverluste – Lost Art Internet Data Base	Sachsen-Anhalt	Magdeburg
Kulturpolitische Gesellschaft e.V.	Nordrhein-Westfalen	Bonn
Kulturstiftung des Bundes	Sachsen-Anhalt	Halle an der Saale
Kulturstiftung DessauWörlitz	Sachsen-Anhalt	Dessau-Roßlau
Kulturzentrum Ostpreussen	Bayern	Ellingen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ordrhein-Westfalen	Bonn
Kunstforum Ostdeutsche Galerie	Bayern	Regensburg
Kunsthalle Bremen	Bremen	Bremen
Kunsthalle in Emden	Niedersachsen	Emden
Kurt-Wolff-Stiftung	Sachsen	Leipzig
Lessing-Museum Kamenz	Sachsen	Kamenz
Martin-Gropius-Bau	Berlin	Berlin
Museum für schlesische Landeskunde im Haus Schlesien	Nordrhein-Westfalen	Königswinter-Heisterbacherrott
Orden Pour le mérite		Bonn
Ostpreußisches Landesmuseum	Niedersachsen	Lüneburg
Otto Benecke Stiftung e.V.	Nordrhein-Westfalen	Bonn

Otto-von-Bismarck-Stiftung	Schleswig-Holstein	Friedrichsruh
Panorama Museum	Thüringen	Bad Frankenhausen
Pommersches Landesmuseum	Mecklenburg-Vorpommern	Greifswald
Ruhrfestspiele Recklinghausen – Europäisches Festival	Nordrhein-Westfalen	Recklinghausen
Rundfunk-Orchester und Chöre GmbH Berlin (ROC Berlin)	Berlin	Berlin
Sammlung industrielle Gestaltung	Berlin	Berlin
Schlesisches Museum zu Görlitz	Sachsen	Görlitz
Siebenbürgen-Institut	Baden-Württemberg	Gundelsheim
Siebenbürgisches Museum Gundelsheim e.V.	Baden-Württemberg	Gundelsheim
Staatliches Institut für Musikforschung – Preußischer Kulturbesitz mit Musikinstrumenten-Museum	Berlin	Berlin
Staatsbibliothek zu Berlin – Preußischer Kulturbesitz	Berlin	Berlin
Staendige Konferenz Mitteldeutscher Barockmusik e.V.	Sachsen-Anhalt	Blankenburg (Harz)
Stiftung Bauhaus Dessau	Sachsen-Anhalt	Dessau-Roßlau
Stiftung Brandenburgische Gedenkstätten	Brandenburg	Oranienburg
Stiftung Buchkunst	Hessen	Frankfurt am Main
Stiftung Bundeskanzler-Adenauer-Haus	Nordrhein-Westfalen	Bad Honnef
Stiftung Bundespräsident-Theodor-Heuss-Haus	Baden-Württemberg	Stuttgart
Stiftung Deutsche Kinemathek – Museum für Film und Fernsehen	Berlin	Berlin
Stiftung Donauschwäbisches Zentralmuseum	Baden-Württemberg	Ulm
Stiftung für das sorbische Volk	Sachsen	Bautzen
Stiftung Fürst-Pückler-Museum – Park und Schloss Branitz	Brandenburg	Cottbus
Stiftung Fürst-Pückler-Park Bad Muskau	Sachsen	Bad Muskau
Stiftung Gedenkstätte Berlin-Hohenschönhausen	Berlin	Berlin
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ordrhein-Westfalen	Bonn
Stiftung Kunstfonds	Nordrhein-Westfalen	Bonn
Stiftung Luthergedenkstätten in Sachsen-Anhalt	Sachsen-Anhalt	Lutherstadt Wittenberg
Stiftung Martin-Opitz-Bibliothek	Nordrhein-Westfalen	Herne
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 Berlin-Brandenburg	Brandenburg	Potsdam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Berlin	Berlin
Stiftung Reichspräsident-Friedrich-Ebert-Gedenkstätte	Baden-Württemberg	Heidelberg
Stiftung Sächsische Gedenkstätten zur Erinnerung an die Opfer politischer Gewaltherrschaft	Sachsen	Dresden
Stiftung Topographie des Terrors	Berlin	Berlin
Stiftung Weimarer Klassik und Kunstsammlungen (Klassik)	Thüringen	Weimar

Stiftung Weimar)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Berlin	Berlin
Tandem – Koordinierungszentrum deutsch-tschechischer Jugendaustausch	Bayern	Regensburg
Tolstoi Hilfs- und Kulturwerk e.V.	Bayern	München
Verband der Gemeinschaften der Künstlerinnen und Kunstfreunde e.V. (GEDOK)	Nordrhein-Westfalen	Wuppertal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e.V.	Nordrhein-Westfalen	Bonn
Verband deutscher Schriftsteller in der ver.di	Berlin	Berlin
Vision Kino gGmbH – Netzwerk für Film- und Medienkompetenz	Brandenburg	Potsdam
Wartburg-Stiftung Eisenach	Thüringen	Eisenach
Weltkulturerbe Völklinger Hütte – Europäisches Zentrum für Kunst und Industriekultur	Saarland	Völklingen
Westpreußisches Landesmuseum	Nordrhein-Westfalen	Münster
Zentralrat Deutscher Sinti und Roma e.V.	Baden-Württemberg	Heidelberg
Zoologisches Forschungsinstitut und Museum Alexander Koenig	Nordrhein-Westfalen	Bonn

4. 독일의 문화·예술 진흥법제의 특징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연방차원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5조 3항에서 "예술의 자유"를 선언하고, 모든 주는 주헌법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진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이러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연방차원의 법률(이를 테면 연방전역에 적용되는 문예진흥법 등)이나 주 정부차원의 법률(주의 문예진흥법령)은 찾아볼 수 없다. 즉 독일은 후술하는 오스트리아의 경우와는 달리, 연방이나 주 차원의 예술진흥법 내지 문화진흥법과 같은 독립된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련한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한곳에 묶는 총괄적인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은 개별 문화·예술분야마다 해당되는 각각의 법률을 제정하여 분야별로 보호·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조형예술 및 응용예술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이, 행위예술이나 음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이, 문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저작권법과 출판법이, 영화·비디오 등을 진흥하기 위해서 영화법이 제정되어 문예 분야마다 각각 보호·진흥하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전체 연방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진흥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행법률을 제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를 테면 음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부란덴부룩주는 「음악학교법」을 제정하고, 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해서 바덴뷔템베르크주는 「도서관법」을 제정한 것이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예에 해당한다.

결국 독일의 경우 지방의 지역문화예술진흥책이란 지역의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이 각종의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 행사, 프로젝트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은 별도의 근거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상 일반적인 재정집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요컨대 독일은 연방제국가체제를 취하면서 이른바 지방의 문화고권을 표방하지만, 실질은 개별 문화예술분야에 따라 전국적인 차원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들이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진흥은 지방의 일차적으로 소관사항이지만, 재정상황과 협정에 따라 연방정부나 지방이 이를 분담한다.

III. 오스트리아 55)

1. 오스트리아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과정

오스트리아는 19세기말 비인(Wien)을 중심으로 찬란한 유럽문화를 꽃피운 적이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독일의 나찌정부에 예속되는 등 많은 정치적 격랑의 시기를 겪었다. 그리하여 2차 대전 이후, 1955년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민주주의·공화주의·연방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연방제국가의 특징으로서 연방과 주의 역할분담이 현재에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에 관해서도 그러한 권한의 소속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총 9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⁵⁶⁾, 각각의 주는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진흥법 외에 별도의 독자적인 문화진흥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입법이 있기까지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의 문화정책은 매우 비정치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당시의 문화정책이란 국영화된 연방극장(Bundestheater)이나 종래부터 있어왔던 이를테면 쾰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er Festspiel)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문학·연구·영화·음악 등의 동시대적 작품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 국외로 도피한 예술가나 지식인의 대부분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급격히 정치화하면서 정부의 문화에 대한 태도도 급속히 변화되었고 각 정당은 당의 강령에 문화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국민당 중심의 보수적 정권으로부터 사회당(현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사회 개혁적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회당정권은 문화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역점을 두었는데, 하나는 "전통적 과제"인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문화재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및 지역간 격차시정에 의한 국민의 문화 참가의 향상이다.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현대적 예술의 진흥, 문화유산의 보호, 지리적·사회경제적 문화격차의 시정, 오스트리아의 전통적·국제적 명성을 유지하는 대외문화정책의 확립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①오스트리

55) 오스트리아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영도 연구위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2005. 8.)를 주로 참고·발췌하였다.

56) Vienna, Tirol주, Salzbug주, Burgenland주, Steiermark주, Ober sterreich주, K rnten주, Nieder sterreich주, Vorarlberg주 등이다.

이의 연방제 시스템에 따른 모든 주에서의 예술진흥, ②다양한 문화기관·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실시, ③문화기관·단체에 대한 구조적 분석의 체계화 시행, ④박물관조직 및 구조개혁, ⑤경제성과 효율성을 지향한 연방극장의 재조직화와 주극장 및 언론매체와의 협력, ⑥동시대(현대) 오페라 및 연극의 진흥, ⑦예술가양성체제의 개편, ⑧영화진흥법(Filmf derungsgesetz 1980)의 제정 등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1983 이후 사회당정권은 1987년까지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당정권시대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전개하기에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제정책 및 문화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및 실천주의적인 사고가 주류가 되어가는 한편 경제적, 상황, 정치시스템의 다원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두로 정당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문화이해의 필요성이 점차 희박하게 되었다. 또한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산을 국가에 의한 보조금만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를 다원화할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문화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지향됨과 아울러 국제사회에 있어서 문화발전의 측면이 중시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부터는 사회당과 국민당의 대연립정권이 형성되면서 국영기업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정부에 의한 예산분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문화정책에 관한 예산 축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정책문제가 부각되었다. 사회당은 이른바 「전망 90(Perspective 90)」을 발표하면서 “문화예술조성재편의 틀”에서 기존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민간부문을 기초로 한 문화스폰서를 고려에 넣는 한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안을 하였다. 국민당도 문화정책에 관한 시각을 변화시켜, 예술문화의 경제적 요소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예술조성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민간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기관의 법적 독립성과 민영화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던 사회당과 국민당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좁혀지면서 양자간의 시각차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방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당과 국민당의 연립정권은 1988년 이른바 문예진흥법(Kunstf derungsgesetz)⁵⁷⁾을 제정하게 되었다.

2.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오스트리아 헌법상 근거

(1) 국가기본법(Staatsgrundgesetz)

57) 법률의 정식명칭은 “연방의 자금을 의한 예술진흥에 관한 1988년 2월 25일의 연방법률(Bundesgesetz vom 25. Feber 1988 ber die F rderung der Kunst aus Bundesmitteln)”인데, 일반적으로 줄여서 문예진흥법(Kunstf derungsgesetz)이라고 통칭한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은 우리나라처럼 단일의 헌법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효력을 가진 여러 복잡다기한 헌법 법규들이 총체적으로 헌법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은 그 조항의 대부분이 통치기구에 관련된 것이고,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연방헌법 제149조에 의하여 헌법적 차원으로 채택된 헌법틀인 국가기본법(Staatsgrundgesetz)⁵⁸⁾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7조a는 "예술적 창작, 예술의 소통 및 전승은 자유이다"⁵⁹⁾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오스트리아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방차원의 헌법상 근거조문이다. 동 조문은 국가기본법 제정당시에는 없다가 1982년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비교적 새로운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비교적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고 큰 특색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개정과정을 통하여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것이다.

1979년 12월 사회당소속의원이 국민의회(Nationalrat)에 제출한 안에 의하면 "① 예술은 자유이다. 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 및 진흥을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예술을 창작하고 실현하며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③ 예술작품 또는 예술적인 성과에 관하여 저작자인 지위에 유래하는 권리 기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2년 가까이 논의가 되었는데, 특히 ①의 예술진흥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 개정안의 규정을 보면 예술진흥을 할 것을 의무화하는 대상은 다양한 차원의 정부(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그대로 국가기본법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예술에 관련한 활동에 참가하려는 개인은 그러한 예술적 참가가 가능하도록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이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하여 국민당 및 자유당을 대표하는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개정안 중 예술진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종전의 국가기본법상 기본권은 자유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추가한다면, 기존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의 정합성이 흔들려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이러한 급부청구권이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상 인정되는 결과로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차원의 정부에 의하여 이미 사실상 구축되어온 예술진흥의 시스템에 대하여

58)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제국의회에서 대표되는 帝國과 주를 위한 제국의회국민의 일반적 권리에 관한 1867년 12월 21일의 국가기본법"(Staatsgrundgesetz vom 21. Dezember 1867, ber die allgemeinen Rechte der Staatsbürger f r die im Reichsrat vertretenen K nigreiche und L nder - StGG)이다.

59) Artikel 17a. : Das k nstlerische Schaffen, die Vermittlung von Kunst sowie deren Lehre sind frei.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 ③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을 구성하는 국가기본법 중에서 "진흥(Förderung)"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경우에 다른 분야에서의 "진흥"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한편 개정안의 규정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을 구성하는 국가기본법에 편입하게 된다면 각 주에서도 예술진흥을 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되었으므로 그 경우에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의 관계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주에 대해서 개정안의 예술진흥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표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한 의견조회 결과, 모든 주가 개정안을 반대하였다. 주정부로서는 항상 주의 자치권을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으므로 문화에 관한 분야에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이와 같은 반대의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개정안은 그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2개항으로 구성된 수정안이 국민의회의 헌법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즉 제1항은 현행 국가기본법 제17a조의 규정과 같이 "예술적 창작, 예술의 소통 및 전승은 자유이다"라는 것이고, 제2항은 "연방, 주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에 의하여 예술상의 창작에 대한 진흥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예술상의 창작의 다양성 및 그 유지에 관하여도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와 국민의회의 표결에서 의견이 갈리어 가결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기본법에 삽입되지 못하고, 수정안의 제1항만이 국가기본법 제17조a에 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예술의 자유에 관한 국가기본법 제17a조는 고전적인 자유권의 규정으로 이해되며, 국민이 예술 활동에 즈음하여 국가에 대하여 진흥·조성을 요구하는 사회권의 규정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다.

(2)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

위에서 본 국가기본법 제17조a의 규정 외에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상의 법원으로는 1920년에 제정된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상 연방과 주의 입법·행정에 관한 권한배분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연방헌법은 연방과 주의 입법·행정에 관한 권한배분의 방식으로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①입법 및 집행의 권한이 전부 연방에 속하는 사항, ②입법권한은 연방에 속하고 집행권한은 주에 속하는 사항, ③원칙적인 것과 관련한 입법권한은 연방에 속하고, 시행법과 관련한 권한 및 집행권한은 주에 속하는 사항, ④입법 및 집행의

권한이 주에 전속하는 사항 등이다.

그런데 연방헌법 제10조 제1항은 이 중 ①입법 및 집행권한이 전부 연방에 속하는 사항⁶⁰⁾을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13호에서 "학술 및 전문적인 목적을 위한 문서관과 도서관서비스, 예술 및 학술에 관한 수집 및 시설과 관련한 사무, 기념물보호, 전례에 관한 사항, 국민통계기관 및 특정주의 이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기타 통계업무, 특정 주의 이익을 초월하며 주에 의해서 관리되지 아니하는 재단 및 기금제도"⁶¹⁾ 등이다. 또한 제6호에서 저작권(Urheberrecht) 및 출판업무(Pressewesen) 등도 연방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헌법 제14조는 학교기관,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원 등은 이에 관한 특별연방헌법에 의해 연방과 주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연방과 주 사이에 효력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⁶²⁾ 이러한 조항으로는 연방정부가 문예진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연방헌법 제15조 제1항은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및 집행의 권한을 연방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고유한 권한으로 유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³⁾ 따라서 국가기본법 제17조a의 규정이나 연방헌법 제10조 제1항 제13호(제6호 포함) 및 제14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연방의 권한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연방헌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입법 및 집행의 권한은 각각의 주에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방 예술진흥법(Kunstförderungsgesetz⁶⁴⁾)

60) Artikel 10. (1) Bundessache ist die Gesetzgebung und die Vollziehung in folgenden Angelegenheiten:

61) wissenschaftlicher und fachtechnischer Archiv- und Bibliotheksdienst; Angelegenheiten der künstlerischen und wissenschaftlichen Sammlungen und Einrichtungen; Denkmalschutz; Angelegenheiten des Kultus; Volkshilfswesen sowie sonstige Statistik, soweit sie nicht nur den Interessen eines einzelnen Landes dient; Stiftungs- und Fondswesen, soweit es sich um Stiftungen und Fonds handelt, die nach ihren Zwecken bei den Interessensbereich eines Landes hinausgehen und nicht schon bisher von den Ländern autonom verwaltet wurden;

62) Artikel 14. Auf dem Gebiet des Schul-, Erziehungs- und Volkshilfswesens wird der Wirkungsbereich des Bundes und der Länder durch ein besonderes Bundesverfassungsgesetz geregelt.

63) Artikel 15. (1) Soweit eine Angelegenheit nicht ausdrücklich durch die Bundesverfassung der Gesetzgebung oder auch der Vollziehung des Bundes betragen ist, verbleibt sie im selbständigen Wirkungsbereich der Länder.

64) 정식명칭은 "연방기금으로부터 예술진흥에 관한 1988. 2. 25. 연방법률"(Bundesgesetz vom 25. Februar 1988 über die Förderung der Kunst aus Bundesmitteln (Kunstförderungsgesetz) BGBl. Nr.146/1988 idF BGBl. I Nr.95/1997 und BGBl. I Nr.132/2000)이다. 줄여서 예술진흥법(Kunstförderungsgesetz)이라고 한다.

(1) 제정 배경

헌법상의 근거나 권한분배 규정에 의하게 되면, 연방으로서는 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일체의 법적 권한도 없거니와 그러한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 문화(Kultur)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며, 연방헌법에서도 문화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이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면서 주의 문화고권(Kulturhoheit der L nder)의 개념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즉 연방정부는 연방예술진흥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문화·예술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진흥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재량으로 조성활동 기타 관여를 해 왔었다. 현재 연방예술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예술진흥에 관하여 연방이 하는 역할은 각 주에 비교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 예술진흥법(Kunstf derungsgesetz)는 1988년 사회당과 국민당의 연립정권하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는 당시 연립정권을 구성 하던 사회당과 국민당의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기초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연방헌법 제18조 제1항이 "모든 국가의 행정은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제정이전부터 연방정부에 의한 진흥활동이 근거법규가 존재 하지 않은 채 행정상의 재량으로 실시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그러한 법적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각 주의 문예진흥법과의 충돌 회피

이 법률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진흥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의 성과나 계획이 한 지역의 관심사를 초월하고 또한 오스트리아 연방전체로서 지원하여야 할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적어도 하나의 주의 영역 내에서의 관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조 2항). 즉 지역과 관련한 예술은 각 주의 문예진흥법이, 이와 반해 각 주의 관심을 초월하는 예술에 대해서는 연방예술진흥법이 적용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나) 진흥의 대상

이 법률에서는 "예술(Kunst)"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하지 않고, 진흥의 대상이 되는 예술에 관련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곤란한

논의를 가능한 피하면서 연방의 역할을 한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제2조 1항).

이에는 (i)문학, 연극, 음악, 조형예술, 사진, 영화 및 비디오와 새로운 실험적인 형식의 예술 또는 위에 열거한 종래의 각 예술 분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형식의 예술의 창작, (ii)작품의 공개, 상연 및 기록작성, (iii)작품 및 기록의 보존, (iv)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하는 대상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다) 진흥의 방법

이 법률 제3조 1항에서는 다양한 예술진흥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i)개별 예술창작의 기획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및 물자의 제공, (ii)작품의 구입(특히,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을 대상으로 한다), (iii)이율 또는 분할변제의 점에서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에 의한 금전대부, (iv)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연(年)할부상환금, 이자 또는 신용대부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조금 교부, (v)장학금 지급(특히, 외국 유학에 즈음한 지급), (vi)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 작품의 제작 발주, (vii) 탁월한 예술상의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 의한 서훈 또는 장려를 위한 표창 또는 포상금 내지 상금 수여, (viii)기타 이상의 것 외의 금전 또는 물자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

(라) 기타 주요 사항

(ㄱ) 진흥을 위한 일반적 요건

이 법률 제4조에서는 연방에 의한 예술진흥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반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자금 또는 물자의 공여를 수반하는 진흥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교육·예술·스포츠부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항). 지원은 예술창작의 기획을 개시 또는 완성하는 것이 지원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나, 일부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지원의 제공이 있으면 당해 계획이 재정 면에서 볼 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경우에 한해서 행한다(2항).

(ㄴ) 진흥을 위한 계약의 조건

자금지원 등 진흥의 방법에 의한 지원의 제공에 즈음하여 지원을 얻으려는 자와의 사이에는 연방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의무

및 제반조건을 포함한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야 한다(제5조 제1항). 이때 지원을 얻으려는 자가 연방정부의 기관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의 검사 또는 현장에의 출입검사를 통하여 교부된 지원을 위한 자금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관한 조사를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에 지원을 받은 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질 것을 정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ㄷ)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진흥

이 법률 제7조에서는 연방에 의한 예술진흥이 효율적으로 행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자인 사인(私人)이 연방의 명의 및 재정부담 하에서 예술진흥과 관련한 사무(특히, 보조금의 배분)를 연방에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러한 업무를 맡은 사인과 연방 간에는 권한위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제3자인 사인을 매개시키는 것은 금전 등의 공여·배분 등의 결정에 관련한 책임을 분산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 시에 매개하는 사인을 다원화하게 되면 예술진흥을 둘러싼 연방의 직접 관여로 인해 결과적으로 초래될지도 모르는 압력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술 활동의 자율성과 국가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나온 조치이다.

(ㄹ) 기타

이 법률 제8조에서는 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이 이 법률에 의거한 진흥에 관하여 심의회의 자문을 거침과 동시에 연방재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 및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 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에게 예술진흥의 영역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Kunstförderungsgesetz	연방예술진흥법
<p>Aufgaben der Förderung</p> <p>§1. (1) Im Bewußtsein der wertvollen Leistungen, die die Kunst erbringt, und in Anerkennung ihres Beitrags zur Verbesserung der Lebensqualität hat der Bund die Aufgabe, das künstlerische Schaffen in Österreich und seine Vermittlung zu fördern. Für diesen Zweck sind im jeweiligen Bundesfinanzgesetz die entsprechenden Mittel vorzusehen. Weiters ist die Verbesser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die finanzielle und organisatorische Förderung des künstlerischen Schaffens durch Private und der sozialen Lage für Künstler anzustreben.</p> <p>(2) Die Förderung hat insbesondere die zeitgenössische Kunst, ihre geistigen Wandlungen und ihre Vielfalt im Geiste von Freiheit und Toleranz zu berücksichtigen. Sie hat danach zu trachten, die Kunst allen Bevölkerungskreisen zugänglich zu machen und die materiellen Voraussetzungen für die Entwicklung des künstlerischen Lebens in Österreich zu verbessern.</p>	<p>제1조(예술진흥의 책무)</p> <p>(1)연방은 예술이 가져오는 실로 다양한 성과를 인식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에 예술이 기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입각하여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예술의 창작활동 및 그 보급·전달을 진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매년도의 연방예산법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상응하는 예산이 미리 계상되어야 한다. 나아가 예술의 창작활동에 대한 민간의 재정적 지원 및 조직적 지원에 관련하는 제반조건의 기반의 개선과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p>(2)예술을 진흥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에 관하여 자유롭고 관용적인 정신으로서 정신적인 변화 및 그 다양성에의 배려가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예술의 진흥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주민이 예술에 친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예술가의 생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인 제반조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Gegenstand der Förderung</p> <p>§ 2. (1) Im Sinne des § 1 sind insbesondere zu fördern:</p> <p>1. Das künstlerische Schaffen der Literatur, der darstellenden Kunst, der Musik, der bildenden Künste, der Fotografie, des Films und der Videokunst sowie neuer experimenteller oder die Grenzen der genannten Kunstsparten überschreitender Kunstformen;</p> <p>2. die Veröffentlichung, Präsentation und Dokumentation von Werken;</p> <p>3. die Erhaltung von Werkstücken und Dokumenten;</p> <p>4. Einrichtungen, die diesen Zielen dienen.</p> <p>(2) Es dürfen nur Leistungen und Vorhaben einer natürlichen oder vom Bund verschiedenen juristischen Person gefördert werden, die von berregionalem Interesse oder geeignet sind, beispielgebend zu wirken, innovatorischen Charakter haben oder im Rahmen eines einheitlichen Förderungsprogramms gefördert werden.</p>	<p>제2조(진흥의 대상)</p> <p>(1)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의한 진흥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학, 연구, 음악, 조형예술, 사진, 영화 및 비디오와 새로운 실험적인 형식의 예술 또는 위에 열거한 종래의 각 예술분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형식의 예술의 창작 2. 작품의 공개, 상연 및 기록 작성 3. 작품 및 기록의 보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하는 대상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 <p>(2) 이 법률에 의한 진흥은 자연인 또는 연방을 제외한 법인에 의한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가져오는 성과 또는 책정된 기획으로서 특정의 지역에만의 이해를 초월한 관심에 의거하는 것 외에, 같은 성과 또는 기획으로서 법률로서의 역할을 거두는데 상응하는 것, 혁신적인 본질을 가지는 것 또는 통일된 진흥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실시하는 것이</p>

<p>(3)In die Förderung nach diesem Bundesgesetz sind Bereiche des Kunstlebens nicht einzubeziehen, deren Förderung durch den Bund sondergesetzlich geregelt ist.</p> <p>(4)Ein der Bedeutung der zeitgenössischen Kunst angemessener Anteil der Förderungsmittel ist für diesen Bereich des künstlerischen Schaffens und seine Veröffentlichung oder Präsentation zu verwenden.</p> <p>Arten der Förderung</p> <p>§3. (1) Arten der Förderung im Sinne dieses Bundesgesetzes sind:</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eld- und Sachzuwendungen für einzelne Vorhaben (Projekte), 2. der Ankauf von Werken (insbesondere der zeitgenössischen Kunst), 3. zins- oder amortisationsbegünstigte Gelddarlehen, 4. Annuitäten-, Zinsen- und Kreditkostenzuschüsse, 5. die Vergabe von Stipendien (insbesondere von Studienaufenthalten im Ausland), 6. die Erteilung von Aufträgen zur Herstellung von Werken der zeitgenössischen Kunst, 7. die Vergabe von Staats-, Würdigungs- und Förderungspreisen sowie Prämien und Preise für hervorragende künstlerische Leistungen und 8. sonstige Geld- und Sachzuwendungen. <p>(2) Sofern Einrichtungen der Bundesschulen gegen jederzeitigen Widerruf für künstlerische Zwecke verlassen werden, darf diese Überlassung unentgeltlich erfolgen.</p> <p>(3) Stipendien im Sinne des Abs.1 Z 5 und Preise im Sinne des Abs.1 Z 7 sind von der Einkommensteuer befreit. Dies gilt auch für im Grunde und der Höhe nach vergleichbare Leistungen auf Grund von landesgesetzlichen Vorschriften sowie für Stipendien und Preise, die unter vergleichbaren Voraussetzungen von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Förderungsinstitutionen vergeben werden.</p> <p>(4) Der Bund kann den Ankauf von Kunstwerken</p>	<p>인정된다.</p> <p>(3)이 법률에 의한 진흥은 다른 연방법인 진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예술활동의 분야에 관하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4)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의 진흥에 즈음하여서는 당해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창작 또는 공표, 실연을 위하여 예술의 진흥에 충당되는 자금 중에서 당해 예술이 가지는 의의에 상응하는 배분액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진흥의 방법)</p> <p>(1)이 법률에 의한 진흥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 예술창작의 기획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및 물자의 제공 2. 작품의 구입(특히,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을 대상으로 한다) 3. 이율 또는 분할변제의 점에 서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에 의한 금전대부 4.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연할부상환금, 이자 또는 신용대부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조금 교부 5. 장학금지급(특히, 외국유학에 즈음한 지급) 6.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 작품의 제작발주 7. 탁월한 예술상의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 의한 서훈 또는 장려를 위한 표창 또는 포상금 내지 상급 수여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것 외의 금전 또는 물자의 제공 <p>(2) 예술상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이 설치하는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3)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장학금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하는 상급에 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과세면제의 특례조치는 제1항에 규정하는 진흥의 대상이 되는 예술상의 성과로서 질적 및 수준의 면에서 비견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주의 법률을 근거로 수여되는 장학금 또는 상급에 관하여 적용함과 아울러 국내의 예술진흥관련기관 또는 국제적인 기관이 예술상의 성과에 대하여 수여하는 장학금 또는 상급에 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하는 진흥의 대상이 되는 예술상의 성과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p>
--	--

<p>durch Landes- und Gemeindegalerien durch Zuschüsse fördern, wenn dies im gesamtösterreichischen Kunstinteresse gelegen ist. § 5 Abs.1 und 2 ist anzuwenden.</p>	<p>적용한다. (4)연방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미술품전시시설에 의한 예술작품의 구입에 관하여 당해 구입이 오스트리아 전체의 예술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p>
<p>Allgemeine Voraussetzungen für die Förderung</p>	
<p>§ 4.(1) Voraussetzung für die Gewährung der in § 3 Z 1,3,4,5 und 8 genannten Förderungen ist die Einbringung eines Ansuchens beim Bundesministerium für Unterricht, Kunst und Sport.</p>	<p>제4조(진흥을 위한 일반적 요건) (1)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열거하는 진흥의 방법에 의한 지원의 제공은 연방교육·예술·스포츠부에 대한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한다.</p>
<p>(2) Eine Förderung darf nur erfolgen, wenn das Vorhaben (Projekt) ohne sie nicht oder nicht zur Gänze in Angriff genommen oder durchgeführt werden kann und bei Gewährung der Förderung finanziell gesichert ist. Nach Maßgabe seiner wirtschaftlichen Leistungsfähigkeit hat der Förderungswerber eine finanzielle oder sachliche Eigenleistung zu erbringen. Ist dem Förderungswerber eine Eigenleistung wirtschaftlich nicht zumutbar, kann davon abgesehen werden.</p>	<p>(2) 지원은 예술창작의 기획을 개시 또는 완성하는 것이 지원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나, 일부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지원의 제공이 있으면 당해 계획이 재정 면에서 볼 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경우에 한해서 행한다. 지원을 얻으려는 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자기 부담으로 금전 또는 물자를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을 얻으려는 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자기부담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Das Förderungsansuchen hat Angaben darüber zu enthalten, ob der Förderungswerber für dasselbe Vorhaben bei einem anderen Organ des Bundes oder einem anderen Rechtsträger um Gewährung von Förderungs Mitteln angesucht hat oder ansuchen will. Gegebenenfalls sind die gewährten oder in Aussicht gestellten Mittel bei der Bemessung der Höhe der Förderung aus Bundesmitteln zu berücksichtigen. Werden durch eine beabsichtigte Förderungsmaßnahme Interessen (Aufgaben) anderer Gebietskörperschaften berührt, ist eine angemessene Beteiligung dieser Gebietskörperschaften an der Durchführung der Förderungsmaßnahmen unter weitestmöglicher Koordinierung des beiderseitigen Mitteleinsatzes anzustreben. Weiters ist nach Möglichkeit eine Kostenbeteiligung privater Förderer anzustreben und der Förderungswerber diesbezüglich zu beraten und zu unterstützen.</p>	<p>(3) 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에는 지원을 얻으려는 자가 동일한 계획을 위하여 연방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적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위한 자금 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별도로 행하거나 행할 예정의 가부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얻었거나 얻어질 예정에 있는 지원의 자재는 연방의 자금으로부터의 지원액의 사정에 즈음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실시예정인 지원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원에 사용하는 자금에 관하여 가능한 한 연방정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을 통하여 지원조치의 실시에 즈음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원자가 될 수 있는 사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지원조치에 요하는 자금을 부담할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원을 얻으려는 자에 대하여 사인인 지원자의 관여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원조를 하여야 한다.</p>
<p>(4) Dieses Bundesgesetz räumt keinen individuellen Anspruch auf die Gewährung einer Förderung ein.</p>	

<p>Bedingungen für die Förderung</p> <p>§ 5.(1) Vor Gewährung einer Förderung gemäß § 3 Abs.1 Z 1 bis 6 und 8 ist mit dem Förderungswerber ein Vertrag abzuschließen, der alle Auflagen und Bedingungen enthält, die den wirtschaftlichen Einsatz der Bundesmittel sicherstellen. Auflagen und Bedingungen haben der Eigenart des Vorhabens zu entsprechen und sollen eine möglichst rasche und einfache Vergabe der Mittel ermöglichen. Musterverträge sind den Förderungsrichtlinien anzuschließen.</p> <p>(2) Im Vertrag kann der Förderungswerber verpflichtet werden, den Organen des Bundes die Überprüfung der widmungsgemäßen Verwendung der Förderungsmittel durch Einsicht in die Bücher und Belege sowie durch Besichtigung an Ort und Stelle zu gestatten, ihnen die erforderlichen Auskünfte zu erteilen und über die Verwendung der Förderungsmittel innerhalb einer zu vereinbarenden Frist zu berichten. Vom Erfordernis des Berichts über die Verwendung der Förderungsmittel kann abgesehen werden, wenn dies im Hinblick auf die Höhe der Förderung oder die Art des Vorhabens geboten ist. Die näheren Regelungen sind in den Förderungsrichtlinien zu treffen.</p> <p>(3) Eine Förderung durch ein Gelddarlehen darf ganz oder teilweise in eine Geldzuwendung umgewandelt werden, wenn der angestrebte Erfolg des Vorhabens wegen nachfolgend ohne Verschulden des Förderungsempfängers eintretender Ereignisse nur durch eine solche Umwandlung erreicht werden kann.</p> <p>§ 6. Für den Fall, daß der Vertrag aus Gründen, für die der Förderungswerber verantwortlich ist, von diesem in wesentlichen Punkten nicht eingehalten wird, ist in diesem gemäß § 5 abzuschließenden Vertrag zu vereinbaren, dass Geldzuwendungen und Zuschüsse nach § 3 Abs.1 Z 1,4,5 und 8 zurückzuerstatten oder noch nicht zurückgezahlte Darlehen nach Kündigung vorzeitig fällig zu stellen und vom Tage der Auszahlung an mit 3 vH über dem jeweils geltenden Zinsfuß für Eskontierungen der Österreichischen Nationalbank pro Jahr zu verzinsen sind.</p> <p>Mittelbare Förderung</p> <p>§7.(1) Der Bundesminister für Unterricht, Kunst und Sport ist ermächtigt, mit sachlich in Betracht kommenden</p>	<p>(4) 이 법률은 개인에 의한 지원제공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p> <p>제5조(진흥을 위한 계약의 조건)</p> <p>(1)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열거한 진흥의 방법에 의한 지원의 제공에 즈음하여 지원을 얻으려는 자와의 사이에 연방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의무 및 제반조건을 포함한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야 한다. 이 의무 및 제반조건은 신청된 계획의 특성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자금의 신속하고 간편한 교부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p> <p>(2) 전항의 계약에 있어서는 지원을 얻으려는 자가 연방정부의 기관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의 검사 또는 현장에의 출입검사를 통하여 교부된 지원을 위한 자금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관한 조사를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에 지원을 받은 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질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보고에 관하여는 지원액 또는 기획의 태양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요구하는 것을 요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상세한 것은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p> <p>(3) 지원이 금전대부의 형태로 행해진 경우에 지원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된 후발적 사정의 원인으로 대부받은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원을 위한 진흥의 방법을 증여로 변경하지 아니하며 예정된 계획의 성취가 불가능한 때에는 진흥의 방법을 대부로부터 증여로 변경할 수 있다.</p> <p>제6조</p> <p>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관하여 그 주요한 부분이 지원을 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당해계약에서는 제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금전 또는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거나 대부금의 범위 내에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후 본래의 기한보다 조기 변제기간을 도래시킴과 아울러 변제일 이후 오스트리아국립은행이 정하는 금리(기준금리)로 당해시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에 3%가 가산된 연이율로</p>
---	--

<p>Rechtsträgern mit Ausnahme der Gebietskörperschaften Verträge des Inhalts abzuschließen, dass Förderungen aus Bundesmitteln durch diese Rechtsträger im Namen und für Rechnung des Bundes nach Maßgabe dieses Bundesgesetzes verteilt werden können, wenn die Besonderheiten bestimmter Förderungen eine Mitwirkung solcher bevollmächtigter Rechtsträger geboten erscheinen lassen und durch diese Mitwirkung die Sparsamkeit, Wirtschaftlichkeit und Zweckmäßigkeit des Einsatzes der Bundesmittel verbessert wird. Nach Möglichkeit sind mit der Durchführung der mittelbaren Förderung Rechtsträger zu beauftragen, die sich an den Kosten des Vorhabens beteiligen.</p>	<p>계산한 이자를 붙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2) Verträge gemäß Abs.1 sind im jährlichen Kunstbericht darzustellen und zu begründen.</p>	<p>제7조(간접적인 진흥)</p>
<p>Förderungsrichtlinien</p>	<p>(1) 연방의 자금으로 행하는 진흥의 범위 내 특정한 것에 관하여 당해 진흥의 특질에서 보아 일정 범위 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당해 협력을 통하여 연방의 자금사용에 있어서 비용 삭감, 경제적 효율성, 목적 적합성의 점에서 개선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방자금에 의한 진흥에 관하여 연방의 명의 및 재정부담에 의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즉응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주체(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 분담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은 당해 부담을 시키는 법적 주체와의 사이에 체결할 수 있다.</p>
<p>§8. Der Bundesminister für Unterricht, Kunst und Sport hat die näheren Vorkehrungen, die bei der Gewährung von Förderungen nach diesem Bundesgesetz zu treffen sind, nach Vorberatung mit den Beiräten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Finanzen durch Richtlinien festzulegen.</p>	<p>권한을 위임받은 법적 주체는 가능한 한 간접적인 진흥의 실시를 위임하도록 하고, 기획의 비용 면에서 협력을 한다.</p>
<p>Beiräte</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예술에 관한 연차보고서 중에 기재됨과 아울러 체결에 즈음한 이유가 첨부되어야 한다.</p>
<p>§9. Der Bundesminister für Unterricht, Kunst und Sport kann zur Vorbereitung und Vorberatung von Förderungsangelegenheiten einzelner Kunstsparten Beiräte oder Jurien einsetzen, in die Fachleute der jeweiligen Sparte zu berufen sind.</p>	<p>제8조(진흥에 관한 가이드라인)</p> <p>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은 이 연방법에 의거한 진흥의 제공에 있어서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상체에 관하여 미리 심의회의 자문을 거침과 동시에 연방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야 한다.</p>
<p>Kunstbericht</p>	<p>제9조(심의회)</p>
<p>§10. Der Bundesminister für Unterricht, Kunst und Sport hat dem Nationalrat im Wege der Bundesregierung einen jährlichen Bericht über die Tätigkeit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Kunstförderung vorzulegen.</p>	<p>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은 개별 예술분야에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 및 자문에 의거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 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 등의 위원에는 각 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하여야 한다.</p>
<p>Freiheit von Stempelgebühren</p>	<p>제10조(예술에 관한 보고서)</p>
<p>§11. Die durch dieses Bundesgesetz unmittelbar veranlaßten Schriften sind von den Stempelgebühren befreit.</p>	<p>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국민의 회에 대하여 예술진흥의 영역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Vollziehung</p> <p>§12. Mit der Vollziehung dieses Bundesgesetzes sind betraut:</p> <p>1. Hinsichtlich des § 8 der Bundeskanzler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Finanzen, 2. hinsichtlich des § 3 Abs.3, des § 11 und des § 13 der Bundesminister für Finanzen, 3. im übrigen der Bundeskanzler.</p> <p>§13. § 3 Abs.3 ist auf Zeiträume ab dem 1. Jänner 1991 anzuwenden.</p> <p>Ge ndert am 05. 03. 2007</p>	<p>제11조</p> <p>직접 이 연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문서류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p> <p>제12조(시행)</p> <p>이 연방법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p> <p>1. 제8조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공화국수상. 다만, 연방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제3조 제3항,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재무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규정외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공화국수상</p> <p>제13조</p> <p>제3조 3항의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

4. 찰츠부르크주의 문화진흥법제

(1) 주 헌법상의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는 문화에 관한 명확한 권한소속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법적 개념도 불명확하여 연방이 문화행정의 분야에서 소관 사무를 확대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서는 자신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에 처하였다. 이 때문에 주로서는 권한축소에 이르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주헌법에 문화의 정의규정을 두는 한편, 문화에 관한 권한이 주에 속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주는 문화에 관한 권한은 주가 연방에 우선한다는 것을 주 헌법에서 선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서 주헌법에 문화에 관한 규정을 둔과 아울러 각 주의 문예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문화행정에 관한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방식을 택하였다.

찰츠부르크주 헌법(Verfassungsgesetz, 1999)는 제9조 전단에서 "주 전체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주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발전에 있어서는 "주민의 경제, 사회, 건강위생 및 문화에 관한 요망에 관하여 특히, 장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면서 배려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후단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문화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최상의 교육제도의 존립, 학문의 더 나은 발전, 예술 및 문화와 그 자유, 자주성 및 다양성의 존중, 보존할 가치 있는 문화재의 보호, 교육 및 문화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자가 그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 등이 주 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팔츠부르크주의 문화진흥법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된 팔츠부르크주 문화진흥법(Salzburger Kulturförderungsgesetz⁶⁵)은 총 8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진흥의 기본원칙

동법은 제1조에서 문화진흥을 위한 세 가지 기본원칙 및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첫째, 문화 활동은 인간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진흥은 과거의 문화 유산을 전승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문화의 존속에 공헌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적 창조는 자유라고 하면서, 진흥은 문화활동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문화진흥이 문화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지역적인 문화 수준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진흥

동법 제2조는 문화진흥의 주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주(Land)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가 그것이다. 주는 문화활동이 팔츠부르크 주내에서 행해지거나 팔츠부르크주와 특별한 관련이 있을 때에 이를 진흥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주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 지역의 문화진흥에 관해서는 고유한 소관업무로서 이에 관한 권리·의무를 진다. 주와 기초지방단체가 문화진흥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 진흥의 보장이나 특정한 진흥방식 및 진흥액수 등에 관한 법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65) 정식명칭은 "팔츠부르크주에 있어서 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Gesetz vom 11. Dezember 1997 über die Förderung der Kultur im Land Salzburg(Salzburger Kulturförderungsgesetz) StF: LGBl Nr 14/1998)Blg LT 11. GP: Rv 101, AB 216, jeweils 5. Sess).

여기에서 "문화진흥"이라고 할 때의 "문화"란 예술, 민속문화, 일상문화, 학문, 교육을 포함한다.

(다)진흥의 종류

동법 제3조는 문화진흥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다. ①콩쿠르의 공고와 시행, ②과제의 부여, ③문화적 의미 있는 작품의 취득과 공개, ④명예상과 진흥상 및 장학금, ⑤문화전파와 관련한 문화행사, 강연, 코스, 세미나, 시설 등, ⑥문화 활동 및 문화적 행사나 물적 지원을 위한 주선, 상담, 조직상의 원조, ⑦보조금,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보증과 연(年)할부상환금·이자·신용대부수수료의 보증 및 미지급채무의 인수, ⑧진흥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간행 및 기타 문화적 출간, ⑨문화 분야와 그것의 진흥에 관한 기초연구 등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

(라)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

진흥책 중에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요구된다. ①지원자는 과거의 활동 경력과 계획서 등이 기술된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재정적 지원은 사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③재정적 지원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이상을 넘어설 수 없고, ④지원자는 계획실천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적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⑤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향후 운영상의 재정지원가능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⑥지원자는 지원금을 서약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추후 사용내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건을 위반한 시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마)주문화심의회

짚츠부루크주는 문화진흥에 대한 기본문제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진흥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한기관으로 주문화심의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5조 1항). 주문화심의회는 짚츠부루크주의 주요 문화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관이다.

ㄱ)설치

주문화심의회는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동법 제5조 2항). 8인의 위원은 주정부가 예술계, 민속문화계, 학계, 교육계에서 위촉한다(동법 제5조 3항). 나머지 16인의 위원은 2단계에 걸친 선거에 의해서 위촉된다. 우선 주문화심의회는 위원 중에서 각각 예술·민속문화·학계를 대표하여 절반인 4명의 위원을 선거위원단으로 선출한다. 선거위원단에는 주정부를 대표하여 3명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문화심의회 위원의 선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위원추천을 받아서 이들 피추천인 명부를 만든 다음, 선거위원단에서 이들 피추천인을 상대로 상대다수로 위원을 선출한다(동법 제5조 4항). 주문화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무급의 명예직이다(동법 제5조 9항).

주문화심의회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 수 있다. 위원위촉 후 첫 회의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며, 모든 위원들은 동시에 임기를 마친다. 임기 중에 주문화심의회로부터 위원에서 제명된 경우에, 주문화심의회에서의 선거를 통해 위촉된 새로운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활동한다(동법 제5조 6항).

주문화심의회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Beiratsausschuß)를 두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각각의 문화분과 및 구성분과를 위해 분과심의회(Fachbeiräte)를 설치한다. 분과심의회는 의견서와 제안서의 준비를, 심의위원회는 주문화심의회로부터 이관된 특정한 과제의 심의를 담당한다(동법 제5조 8항).

ㄴ) 업무

주문화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①문화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②주정부에 대해 중요한 문화문제의 해결이나 대형 문화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제안이나 방법의 전달, ③주정부의 구체적인 문화적 목표설정에 관여, ④주의 문화진흥 제안신청에 대한 선별 등이다(동법 제10조 1항).

또한 주문화심의회는 ①문화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 법이나 주정부의 규정에 대한 초안, ②문화건축물 또는 행사와 같은 주의 문화적 거대계획, ③문화사항과 관련한 다른 주 혹은 연방 및 다른 국가/일부국가 등과의 공동협력에 관한 계약, ④문화보고서 혹은 주의 문화 활동에 관한 다른 결과보고서, ⑤기타 주정부의 요청에 따른 문화적 안건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다(동법 제10조 2항).

ㄷ) 활동

주문화심의회는 년 최소 4회 이상 개최된다. 회의의 소집은 5인 이상의 위원 또는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동법 제7조 1항). 회의가 규정에 좇아 개최되었고

의장을 제하고서 위원의 절반이상이 참여하였다면 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고, 의결은 상대다수로 이루어진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동법 제7조 2항). 주문화심의회는 2/3이상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의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규정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7조 4항).

Salzburger Kulturförderungsgesetz	짚츠부르크 문화진흥법
<p>Grundsätze und Ziele der Kulturförderung</p> <p>§ 1 Der Kulturförderung nach diesem Gesetz liegen folgende Grundsätze und Ziele zugrund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ulturelle Betätigung ist für die Entwicklung des Menschen wesentlich. Sie kann in einem zeitgenössischen kulturellen Schaffen und in der Pflege des kulturellen Erbes der Vergangenheit bestehen. Die Förderung hat darin zu unterstützen und zur Bewahrung für Gegenwart und Zukunft sowie zum Fortbestand bewährter Kultureinrichtungen beizutragen. 2. Das kulturelle Schaffen ist frei. Die Förderung hat zur Sicherung dieser Freiheit beizutragen. Bei der Förderung ist darauf zu achten, daß Unabhängigkeit und Vielfalt der kulturellen Tätigkeit gewährleistet bleiben. 3. Alle Menschen haben ein Recht auf Teilnahme am kulturellen Leben. Die Förderung hat die kulturellen Errungenschaften und Einrichtungen der Bevölkerung allgemein zugänglich zu machen und das Verständnis hierfür zu wecken sowie zum Abbau sozialer und regionaler Benachteiligungen in kulturellen Belangen beizutragen. 	<p>제1조(문화진흥의 원칙과 목적)</p> <p>이 법에서 문화진흥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활동은 인간의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은 동시대의 문화적 창조와 과거의 문화유산의 전승을 통하여 존재할 수 있다. 진흥은 그러한 가운데 행해져야 하며, 현재와 미래의 유지 및 보존되는 문화시설의 존속에 공헌하여야 한다. 2. 문화적 창조는 자유이다. 진흥은 이러한 자유의 보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진흥을 함에 있어서 문화활동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진흥은 문화적 성과 및 시설에 주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이해를 자각시키고 문화적 수준에 있어서 사회적·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p>Kulturförderung durch Land und Gemeinden</p> <p>§ 2</p> <p>(1) Das Land Salzburg ist verpflichtet, im Interesse des Landes und seiner Bevölkerung die kulturelle Tätigkeit als Träger von Privatrechten zu fördern, vornehmlich wenn sie im Land Salzburg ausgebt wird oder in einer besonderen Beziehung zum Land Salzburg steht. Für diesen Zweck sind im Landeshaushalt unter Bedachtnahme auf die</p>	<p>제2조(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진흥)</p> <p>(1) 짚츠부르크주는 주(Land)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권의 행사자로서, 특히 짚츠부르크주 내에서 행해지거나 짚츠부르크주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화활동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예산에서는 주예산에 관한 다른 요구사항들과 주의 재정여</p>

<p>anderen Erfordernisse an den Landeshaushalt und die finanziellen Möglichkeiten des Landes ausreichend Mittel vorzusehen. Ein angemessener Teil davon ist für das zeitgenössische kulturelle Schaffen zu verwenden.</p> <p>(2) Auch die Gemeinden sollen die kulturelle Tätigkeit in ihrem Gebiet als Trägerinnen von Privatrechten fördern.</p> <p>Kulturförderung durch die Gemeinden ist eine Angelegenheit ihres eigenen Wirkungsbereiches. Soweit die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in Betracht kommen, sollen die Gemeinden dabei diesen entsprechend vorgehen. Fördermittel des Landes für Bauten der Gemeinden, die öffentlichen Zwecken dienen, sollen nur gewährt werden, wenn die Gemeinde zur integrierten künstlerischen Gestaltung der Bauten im Sinn des 3 Abs 3 vorgeht. Dies gilt auch in bezug auf Bauten, die unter sinngemäßer Anwendung des letzten Satzes der zitierten Bestimmung Bauten der Gemeinde gleichzuhalten sind.</p> <p>(3) Durch die Gewährung von Förderungen durch das Land und die Gemeinde soll die Förderung der Kultur durch andere öffentliche Förderungsgrößen sowie die private Förderungstätigkeit nicht behindert werden. Eine Abstimmung der Förderungen durch das Land und die Gemeinden aufeinander sowie mit Förderungen von anderer Seite, insbesondere vom Bund, ist anzustreben.</p> <p>(4) Als Bereiche der Kultur sind nach diesem Gesetz die Kunst, die Volks- und Alltagskultur, die Wissenschaft und die Bildung zu fördern.</p> <p>(5) Die Erhaltung und Förderung des Landestheaters Salzburg und des Salzburger Mozarteum Orchesters sowie die Angelegenheiten der Salzburger Festspiele werden durch dieses Gesetz nicht berührt.</p> <p>(6) Auf die Gewährung einer Förderung sowie auf eine bestimmte Art und Höhe der Förderung besteht kein Rechtsanspruch.</p> <p>Arten der Förderung</p> <p>§ 3</p>	<p>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금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 자금의 적당한 부분은 현재의 문화 창조에 사용되어야 한다.</p> <p>(2) 기초지방자치단체들(Gemeinde)도 사권(私權)의 행사자로서 그 지역의 문화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진흥은 고유의 소관 사항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진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효력범위를 가진 업무이다. 이 법에서 규정된 바가 있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대한 주의 진흥기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3조 3항의 의미에서 건축물의 융합된 예술적 형성을 위하여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될 수 있다. 이것은 제3조 3항 마지막 문장의 준용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러하다.</p> <p>(3)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진흥의 보장으로 말미암아 다른 공적 진흥기관 및 사적 진흥활동을 통한 문화진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의한 진흥 및 다른 곳(특히 연방)으로부터의 진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4) 이 법에서 의미하는 문화의 분야로써 예술, 민속문화/일상문화, 학문과 교육을 진흥한다.</p> <p>(5) 「잘츠부르크 주립극장」과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및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행사의 보존과 진흥은 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p> <p>(6) 진흥의 보장 및 진흥의 특정한 방식 및 액수에 대한 법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p>
---	---

<p>(1) Die Förderung der kulturellen Tätigkeit in den im §2 Abs 4 genannten Bereichen kann insbesondere erfolgen du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usschreibung und Durchführung von Wettbewerben; b) Vergabe von Aufträgen; c) Erwerb und Zugänglichmachen von Werken kultureller Bedeutung; d) Ehren- und Förderungspreise sowie Stipendien; e) kulturelle Veranstaltungen, Vorträge, Kurse, Seminare, Einrichtungen u.dgl. zur Kulturvermittlung; f) Anregung, Beratung und organisatorische Hilfe für kulturelle Tätigkeit und für kulturelle Veranstaltungen, Beistellung von Sachleistungen hierfür; g) Beiträge, Gewährung von Darlehen und Gewährung von Annuitäten-, Zinsen- und Kreditkostenzuschüssen an natürliche und juristische Personen sowie die Übernahme von Ausfallhaftungen; h) Herausgabe eines jährlichen Kulturberichtes mit Angaben über die Verwendung der Förderungsmittel und anderer kultureller Publikationen; i) Grundlagenforschung auf dem Gebiet der Kultur und deren Vermittlung. <p>(2) Die Förderung kann außer unmittelbar kulturschaffenden Personen auch physischen und juristischen Personen gewährt werden, die für das kulturelle Leben von Bedeutung sind. Die Förderung kann für besondere kulturelle Vorhaben oder für die allgemeine Tätigkeit einer im Bereich der Kultur tätigen Person oder Einrichtung gewährt werden.</p> <p>(3) Bei Bauten des Landes, die öffentlichen Zwecken dienen, ist eine integrierte künstlerische Gestaltung anzustreben. Hierbei ist sicherzustellen, daß die künstlerische Einflußnahme auf das Bauvorhaben möglichst frühzeitig einsetzt. Die Aufwendungen für die künstlerische Gestaltung haben sich an der Bedeutung des Bauwerkes und an der Höhe des jeweiligen Bauaufwandes zu orientieren, wobei als Richtwerte bei Hochbauten rund 2 % und bei sonstigen Bauten einschließlich Straßenbauten</p>	<p>제3조(진흥의 종류)</p> <p>(1) 제2조 4항에 열거된 분야에서의 문화적 활동의 진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콩쿠르의 공고와 시행 b) 과제의 부여 c) 문화적 의미 있는 작품의 취득과 공개 d) 명예상과 진흥상 및 장학금 e) 문화전파와 관련한 문화행사, 강연, 코스, 세미나, 시설 등 f) 문화활동 및 문화적 행사나 물적 지원을 위한 주선, 상담, 조직상의 원조 g) 보조금,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보증과 연할부상환금·이자·신용대부수수료의 보증 및 미지급채무의 인수 h) 진흥기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간행 및 기타 문화적 출간 i) 문화 분야와 그것의 진흥에 관한 기초연구 <p>(2) 지원은 직접적인 문화창조자 외에도 문화적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도 보장된다. 지원은 특별한 문화적 계획이나 문화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개인이나 기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해서 보장될 수 있다.</p> <p>(3) 공익목적에 제공된 주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술적으로 융합된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에 대하여 예술적 영향력이 가능한 조기에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예술적 형성을 위한 지출은 건축물의 중요성과 건축비용의 고저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개산가적으로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총건축비용의 약 2%, 도로건축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1%가 적용된다. 건축</p>
--	--

<p>1 % der Bausumme gelten. Werden bei einzelnen Bauvorhaben diese Richtwerte erheblich unterschritten, finden die nicht verbrauchten Mittel bei der künstlerischen Gestaltung anderer Bauvorhaben Verwendung. Bauten eines Rechtsträgers, an denen das Land allein oder zumindest überwiegend beteiligt ist oder der aufgrund eines Baugesellschaftsvertrages für das Land auftritt, sind Bauten des Landes gleichzuhalten.</p> <p>Besondere Bestimmungen für die finanzielle Förderung</p> <p>§ 4</p> <p>(1) Voraussetzung einer finanziellen Förderung ist die Einbringung eines Begehrens bei der Landesregierung unter Angabe der entfalteten Tätigkeit oder des zu fördernden Vorhabens.</p> <p>(2) Eine finanzielle Förderung darf nur gewährt werden, wenn die entfaltete Tätigkeit oder das Vorhaben nicht ausschließlich oder überwiegend nur in einem privaten Interesse liegt.</p> <p>(3) Die Förderung darf jenes Ausmaß nicht übersteigen, das für die weitere Entfaltung der Tätigkeit bzw. das Zustandekommen des Vorhabens erforderlich ist. In Fällen, in denen eine Eigenleistung des Förderungswerbers/der Förderungswerberin in Betracht kommt, ist eine solche in zumutbarer Höhe Voraussetzung für die Förderung.</p> <p>(4) Der Förderungswerber/die Förderungswerberin muß Gewähr dafür bieten, daß er/sie selber die zur Durchführung des zu fördernden Vorhabens notwendigen fachlichen und sonstigen Voraussetzungen sowie insoweit selber die erforderlichen Mittel verfügt, als solche nicht durch die begehrte und allfällige sonstige Förderungen sichergestellt werden. Vor Gewährung der Förderung ist festzustellen, ob das betreffende Vorhaben auch noch von anderen öffentlichen Förderungsstrategien gefördert werden soll. Eine Förderung durch andere Stellen oder von privater Seite schließt eine Förderung nach diesem Gesetz nicht aus.</p> <p>(5) Bei der Gewährung einer Förderung für neue kulturelle Einrichtungen ist auf die</p>	<p>계획에서 개산가격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에는 다른 건축계획에서 예술적 형성에 집행되지 아니한 기금이 사용된다. 추가 건축주로서 단독으로 혹은 주로 참여한 경우나 건축주계약에 의거해서 주를 위한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의 건축물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4조(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별규정)</p> <p>(1) 재정적 지원은 주정부에 기존의 활동과 진흥이 필요한 계획 등이 기술된 지원서의 제출이 요건이다.</p> <p>(2) 재정적 지원은 기존의 활동 또는 계획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사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보장될 수 있다.</p> <p>(3) 지원은 활동을 전개하거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지원자의 고유한 활동이 판단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추정되는 정도의 금액범위가 진흥요건이다.</p> <p>(4) 지원자는 진흥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 및 기타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신청에 의한 혹은 기타의 재정지원에서 보장된 것을 제외하고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진흥의 보장에 앞서, 해당계획이 다른 공적 진흥기관에 의해 지원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진흥은 다른 측면에서 혹은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흥을 배제하지 않는다.</p>
---	--

<p>Finanzierbarkeit ihres weiteren Betriebes Bedacht zu nehmen.</p> <p>(6) Die Gew hrung der F rderung ist an die Verpflichtung des F rderungswerbers/der F rderungswerberin zur ausschlielich widmungsgemen Verwendung der F rderungsmittel und rechtzeitigen Vorlage des Verwendungsnachweises, an das Einverst ndnis zur allf ligen finanziellen Kontrolle durch das Land und an die Verpflichtung zu binden, im Fall der Nichteinhaltung dieser Bedingungen die gewahrten F rderungsmittel ohne Verzug zur ckzuerstatten.</p> <p>(7) Das Land hat mit Kultureinrichtungen, die einen mittelfristigen Planungsbedarf aufgrund ihrer bisherigen T tigkeit, des Personaleinsatzes, des Programms und der finanziellen Erfordernisse nachweisen k nnen, jeweils zumindest f r zwei volle Kalenderjahre im Voraus F rderungsvereinbarungen abzuschlieen, soweit die bisherige Arbeit und die Vorhaben den Fortbestand der Forderungswurdigkeit erkennen lassen.</p> <p>(8) Die Verleihung von Ehren- und F rderungspreisen gilt nicht als finanzielle F rderung im Sinn dieser Bestimmung.</p> <p>Landes-Kulturbeirat:Einrichtung</p> <p> 5</p> <p>(1) Zur Beratung der Landesregierung in grunds tzlichen oder sonst bedeutsamen Fragen der Kulturpolitik, insbesondere der Kulturf rderung, und zur Erstattung von Vorschlg en in diesen Belangen wird beim Amt der Salzburger Landesregierung ein Beirat eingerichtet. Dieser Beirat fuhrt die Bezeichnung "Landes-Kulturbeirat".</p> <p>(2) Der Landes-Kulturbeirat besteht aus 24 Mitgliedern.</p> <p>(3) Acht Mitglieder werden von der Landesregierung aus den Bereichen der Kunst, der Volkskultur, der Wissenschaft und der Bildung berufen. Die Bestellung erfolgt nach Anhorung von hiezu</p>	<p>(5) 새로운 문화적 시설에 대한 진흥을 보장함에 있어서 는 향후 운영상의 재정지원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6) 진흥의 보장을 함에 있어서 지원자는 지원금을 전적으로 서약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적시에 사용내역의 증명을 제출하고, 주의 재정적 감독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장된 진흥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p> <p>(7) 추가 지금까지의 활동과 인원배치, 프로그램 및 재정 요구 등에 근거하여 중기적인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기관과 진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문화기관의 현재까지의 활동 및 진흥의 필요성이 존속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년 전에 그 문화기관과 진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8) 명예상이나 진흥상의 수여는 본 규정의 재정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p> <p>제5조(주문화심의회 ; 설치)</p> <p>(1) 문화정책 특히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적 혹은 기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주정부를 조언하고 그러한 件에 있어서 제안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하여 찰즈부르크 주정부의 공무조직에 심의회를 설치한다. 이 심의회를 "주문화심의회"라고 칭한다.</p> <p>(2) 주문화심의회는 2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	---

<p>eingeladenen bedeutenderen Einrichtungen, Organisationen und Personengruppen, die in den im §2 Abs 4 genannten Bereichen tätig sind, aus dem Kreis der im Land Kulturschaffenden oder sonst kulturell Tätigen.</p> <p>(4) Die Berufung von 16 Mitgliedern erfolgt durch Wahl in einem zweistufigen Verfahren. Zunächst wählt der Landes-Kulturbeirat aus seiner Mitte vier Mitglieder, die gemeinsam mit drei Vertretern/Vertreterinnen des Amtes der Landesregierung – je einer/eine aus den Bereichen Kunst, Volkskultur und Wissenschaft – ein Wahlkollegium bilden. Dieses Kollegium wählt die Mitglieder aus einer Liste von Wahlvorschlägen. Wahlvorschläge können von jeder interessierten Person erstattet werden. Die Wahl ist geheim durchzuführen. Für die Wahl einer Person gilt die relative Mehrheit. Die weitere Regelung des Wahlvorganges erfolgt in der Geschäftsordnung des Landes-Kulturbeirates.</p> <p>(5) Bei der Berufung der Mitglieder haben die Landesregierung und das Wahlkollegium darauf zu achten, daß möglichst alle nach diesem Gesetz für forderbaren Bereiche und Teilbereiche der kulturellen Betätigung im Landes-Kulturbeirat in einem ausgewogenen Verhältnis vertreten sind. Außerdem ist auf eine zureichende regionale Vertretung für die einzelnen Bereiche des Landes zu achten.</p> <p>(6) Die Tätigkeitsperiode des Landes-Kulturbeirates beträgt vier Jahre und beginnt mit der ersten Sitzung nach der Berufung der Mitglieder und endet für alle Mitglieder gleichzeitig. Dieselbe Person kann unmittelbar aufeinanderfolgend höchstens für zwei Tätigkeitsperioden als dessen Mitglied berufen werden. Bei Ausscheiden von Mitgliedern des Landes-Kulturbeirates während der Tätigkeitsperiode werden die neuen Mitglieder für die Dauer der restlichen Tätigkeitsperiode durch Wahl im Kulturbeirat berufen, wobei Abs 5 zu beachten ist.</p> <p>(7) Der/die Vorsitzende des Landes-Kulturbeirates und der Stellvertreter/die Stellvertreterin werden von der Gesamtheit der Mitglieder aus ihrer Mitte auf die Dauer der Tätigkeitsperiode gewählt. Die Wahl erfolgt nach Konstituierung des Landes-Kulturbeirates in getrennten Wahlgängen. Bis zur Wahl des/der ersten Vorsitzenden obliegt die Einberufung und Leitung der Sitzung dem</p>	<p>(3) 8인의 위원은 주정부가 예술계, 민속문화계, 학계, 교육계에서 위촉한다. 선임은 주요한 기관이나 조직 및 국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생산자 혹은 기타 문화중사자를 대표하여 제2조 4항에 열거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루어진다.</p> <p>(4) 16인의 위원은 2단계에 걸친 선거에 의해서 위촉된다. 우선 주문화심의회는 위원 중에서 각각 예술·민속문화·학계를 대표하여 절반인 4명의 위원을 선거위원단으로 선출한다. 선거위원단에는 주정부의 공무원로 3명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 선거위원단은 피추천인 명부로부터 위원을 선출한다.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각 위원에 대한 선출은 상대다수로 한다. 선거진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문화위원회의 규칙에 따른다.</p> <p>(5)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주정부와 선거위원단은 주문화위원회 내에서 가능하면 이 법률에서 진흥할 수 있는 모든 영역과 문화활동의 부분영역이 적절한 관계에서 대표될 수 있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밖에 주의 세부적인 영역에서 지역적인 대표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6) 주문화심의회 임기는 4년이고 위원위촉 후 첫 회의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며, 모든 위원들이 동시에 임기를 마친다. 선임된 위원은 연속으로 2번의 임기를 한도로 위촉될 수 있다. 임기 중에 주문화심의회로부터 위원에서 제명된 경우에, 주문화심의회에서의 선거를 통해 위촉된 새로운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활동한다. 이때 (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7) 주문화심의회 의장과 대리인은 임기동안의 재임기간으로 위원을 전체 중에서 선출한다. 선거는 주문화심의회가 구성된 후에 별도의 선거절차에 따라 행</p>
---	---

<p>ältesten Mitglied des Landes-Kulturbeirates. Auf die Wahl finden, soweit nicht besonderes bestimmt ist, die Bestimmungen über Beschlüsse des Landes-Kulturbeirates sinngemäß Anwendung. Wahlvorschläge können von jedem Mitglied erstattet werden. Gewählt ist, wer mehr als die Hälfte der gültigen Stimmen erhalten hat. Ergibt sich keine Mehrheit, so findet ein weiterer Wahlgang statt, bei dem gültige Stimmen nur für eine der beiden für die Wahl vorgeschlagenen Personen, die im ersten Wahlgang die meisten Stimmen erhalten haben, abgegeben werden können. Bei diesbezüglicher Stimmengleichheit sowie bei Stimmengleichheit im zweiten Wahlgang entscheidet das vom/von der Vorsitzenden zu ziehende Los. Das Ergebnis der Wahl ist vom Landes-Kulturbeirat der Landesregierung bekanntzugeben. Der/die Vorsitzende wird im Fall der Verhinderung sowie der Erledigung der Funktion durch den Stellvertreter/die Stellvertreterin in allen Aufgaben vertreten. Endet die Funktion des/der Vorsitzenden vorzeitig, ist in sinngemäßer Anwendung dieser Bestimmungen für die restliche Dauer der Funktionsperiode eine Neuwahl durchzuführen.</p> <p>(8) Der Landes-Kulturbeirat hat einen Beiratsausschuß zu bilden, der aus acht Mitgliedern besteht; für einzelne Kulturbereiche und Teilbereiche können Fachbeiräte gebildet werden. Die Fachbeiräte können mit der Vorbereitung von Stellungnahmen und Vorschlägen, der Beiratsausschuß auch mit der selbständigen Behandlung bestimmter, ihm vom Landes-Kulturbeirat übertragener Aufgaben betraut werden. Alle Mitglieder des Beiratsausschusses sowie zumindest der/die Vorsitzende eines Fachbeirates haben Mitglieder des Landes-Kulturbeirates zu sein. Die Bildung des Beiratsausschusses sowie von Fachbeiräten hat der Landes-Kulturbeirat unter Angabe des jeweiligen Aufgabenbereiches sowie der jeweiligen Vorsitzenden und Mitglieder der Landesregierung bekanntzugeben.</p> <p>(9) Die Mitgliedschaft zum Landes-Kulturbeirat ist ein unbesoldetes Ehrenamt. Auf die Entschädigung für die Teilnahme an seinen Sitzungen, den Sitzungen des Beiratsausschusses und der Fachbeiräte findet das Kollegialorgane-Sitzungsentschädigungsgesetz, LGBI Nr 40/1975, Anwendung.</p> <p>(10) Geschäftsstelle des Landes-Kulturbeirates ist das Amt der Landesregierung.</p> <p>Aufgaben des Landes-Kulturbeirates</p>	<p>해진다. 처음의 의장선거까지는 회의의 소집과 주재는 주문화심회의의 최고령위원이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문화심회의의 결의에 관한 규정이 선거에도 준용된다. 모든 위원들은 의장을 추천할 수 있다. 유효득표수의 과반수를 받은 자가 선출된다.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차 투표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2인을 상대로 2차 투표가 진행된다. 2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왔을 때에는 의장이 뽑은 제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정부의 주문화심회의는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의장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궐위되면 대리인이 모든 업무를 대표한다. 의장직을 초기에 종료하게 되면, 잔여임기를 위하여 본 규정을 준용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p> <p>(8) 주문화심회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Beiratsausschuß)를 두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각각의 문화분과 및 구성분과를 위해 분과심의회(Fachbeiräte)를 설치한다. 분과심의회는 의견서와 제안서의 준비를, 심의위원회는 주문화심회의로부터 이관된 특정한 과제의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 및 최소한 하나의 분과심의회 의회장은 주문화심회의의 위원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및 분과심의회 의 구성에 있어서 주문화심회의는 각 업무분장사항과 각 위원장 및 위원들을 주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p> <p>(9) 주문화심회의의 위원자격은 무급의 명예직이다. 회의참가에 따른 수당,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위원회회의수당에 관한 법률」(LGBI Nr 40/1975)가 준용된다.</p>
--	--

<p>§6</p> <p>(1) Dem Landes-Kulturbeirat kommen im Rahmen seiner Beratungstätigkeit insbesondere folgende Aufgaben z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n sich aus Stellungnahmen zu grundsätzlichen Fragen der Kulturpolitik abzugeben; - der Landesregierung Vorschläge und Konzepte zur Lösung wichtiger Kulturprobleme und zur Verwirklichung größerer Kulturprojekte zu erstatten; - die Landesregierung mit konkreten kulturellen Zielsetzungen zu befassen; - Vorschläge zu erstatten, die geeignet erscheinen, die Kulturförderung des Landes oder den Kontakt der Landesverwaltung zu den Kulturschaffenden und zur kulturinteressierten Bevölkerung zu verbessern. <p>(2) Der Landes-Kulturbeirat ist insbesondere in folgenden Fragen zu hören oder kann nach eigenem Ermessen Stellungnahmen abgeb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u Entwürfen für Landesgesetze oder Verordnungen der Landesregierung, die kulturelle Belange betreffen, im Rahmen des Begutachtungsverfahrens; - zu kulturellen Großvorhaben des Landes wie Kulturbauten oder Veranstaltungen; - zu Verträgen über die Zusammenarbeit mit anderen Ländern oder mit dem Bund sowie mit anderen Staaten oder Teilstaaten über kulturelle Belange; - zum Kulturbericht oder zu anderen Abschlußberichten über kulturelle Aktivitäten des Landes; - zu allen anderen kulturellen Angelegenheiten über Ersuchen der Landesregierung. <p>Tätigkeit des Landes-Kulturbeirates</p> <p>§ 7</p> <p>(1) Der Landes-Kulturbeirat ist vom/von der Vorsitzenden nach Bedarf, mindestens jedoch viermal in einem Kalenderjahr einzuberufen. Eine Einberufung hat auch zu erfolgen, wenn dies von wenigstens fünf Mitgliedern oder von der Landesregierung jeweils unter gleichzeitiger Angabe des Grundes beim/bei der Vorsitzenden beantragt wird. Im Fall der Verhinderung ist jedes Mitglied des Landes-Kulturbeirates berechtigt, einen Vertreter/eine Vertreterin seiner Wahl mit allen Rechten in den Landes-Kulturbeirat zu entsenden. Zu</p>	<p>(10) 주문화심의회는 주정부의 청사이다.</p> <p>제6조(주문화심의회 의 업무)</p> <p>(1) 주문화심의회는 심의 활동의 범위 내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 주정부에 대해 중요한 문화문제의 해결이나 큰 문화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제안이나 방법의 전달 - 주정부의 구체적인 문화적 목표설정에 관여 - 주의 문화진흥 또는 수행정책과 문화창조자 및 문화에 관심 있는 주민과의 접촉을 개선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제안신청에 대한 선별 <p>(2) 주문화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청취하거나 고유한 재량에 따라 다음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조회과정에서 문화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 법이나 주정부의 규정에 대한 초안 - 문화건축물 또는 행사와 같은 주의 문화적 거대계획 - 문화사항과 관련한 다른 주 혹은 연방 및 다른 국가/일부국가 등과의 공동협력에 관한 계약 <p>- 문화보고서 혹은 주의 문화활동에 관한 다른 결과보고서</p> <p>- 기타 주정부의 요청에 따른 문화적 안건</p> <p>제7조(주문화심의회 의 활동)</p> <p>(1) 주문화심의회는 필요시, 연 최소 4회 이상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또한 의장에게 이유의 적시와 함께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혹은 주정부의 요청에 의해서</p>
---	--

<p>jeder Sitzung des Landes-Kulturbeirates sind die nach der Geschäftsordnung der Landesregierung zuständigen Mitglieder der Landesregierung sowie die Leiter/Leiterinnen der mit diesen Aufgaben betrauten Abteilungen des Amtes der Landesregierung einzuladen. Ihnen bzw den von ihnen entsendeten Vertretern/Vertreterinnen kommt in den Sitzungen beratende Stimme zu. Zu den Sitzungen des Landes-Kulturbeirates können auch Sachverständige mit beratender Stimme beigezogen werden.</p> <p>(2) Der Landes-Kulturbeirat ist beschlußfähig, wenn die Einberufung ordnungsgemäß erfolgt ist und außer dem/der Vorsitzenden wenigstens die Hälfte der Mitglieder anwesend ist. Beschlüsse des Landes-Kulturbeirates werden mit relativer Stimmenmehrheit gefaßt. Bei Stimmgleichheit gilt jene Meinung als beschlossen, für die sich der/die Vorsitzende ausgesprochen hat.</p> <p>(3) Der Beiratsausschuß ist vom/von der Vorsitzenden nach Bedarf, mindestens jedoch viermal in einem Kalenderjahr sowie dann einzuberufen, wenn dies von wenigstens drei Mitgliedern des Ausschusses oder von der Landesregierung jeweils unter gleichzeitiger Angabe des Grundes beim/bei der Vorsitzenden beantragt wird. Die nach der Geschäftsordnung der Landesregierung zuständigen Mitglieder der Landesregierung und die Leiter/Leiterinnen der mit diesen Aufgaben betrauten Abteilungen des Amtes der Landesregierung sind von den Sitzungen zu verständigen; sie sind berechtigt, an den Sitzungen des Beiratsausschusses und des Fachbeirates teilzunehmen. Abs 1 vorletzter und letzter Satz findet Anwendung.</p> <p>(4) Der Landes-Kulturbeirat gibt sich seine Geschäftsordnung mit Beschluss bei Anwesenheit von mindestens zwei Drittel der Mitglieder. Die Geschäftsordnung hat auch die Geschäftsbehandlung durch den Beiratsausschuß sowie durch die Fachbeiräte zu regeln. Sie bedarf der Bestätigung der Landesregierung.</p> <p>(5) Die Landesregierung kann die Beratung durch einen Fachbeirat unter Verständigung des Landes-Kulturbeirates auch unmittelbar in Anspruch nehmen.</p> <p>In- und Außerkräfttreten, bergangsbestimmungen</p>	<p>도 소집된다. 주문화심회의의 각 위원은 회의참가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주문화심회의의 투표상의 모든 권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문화심회의의 모든 회의에는 주정부의 업무규정에 근거한 주정부의 담당위원 및 주정부의 해당업무부서의 장이 참석한다. 이들 혹은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은 회의에서 심의권한이 있다. 주문화심회의의 회의에서 전문가에게도 심의권이 인정된다.</p> <p>(2) 주문화심회의는 소집이 규정에 좇아 이루어졌고 의장을 재하고서 위원의 절반이상이 참여하였다면 의결권한이 있게 된다. 주문화심회의의 의결은 상대다수로 이루어진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밝힌 견해에 따라 결정된다.</p> <p>(3) 심의위원회는 의장에 의해 필요시 연 최소 4회 이상 소집되는바, 의장에게 이유의 적시와 함께 최소 3인 이상의 위원 혹은 주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된다. 주정부의 업무규정에 근거한 주정부의 담당위원 및 주정부의 해당업무부서의 장에게는 회의개최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들은 심의위원회 및 분과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항의 마지막 제2문 및 마지막 제1문은 여기에 준용된다.</p> <p>(4) 주문화심회의는 2/3이상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의의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업무규정은 심의위원회 및 분과심의회를 통하여 업무취급사항도 정한다. 업무규정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

<p>§ 8</p> <p>(1) Dieses Gesetz tritt mit 1. April 1998 in Kraft.</p> <p>(2) Gleichzeitig tritt das Salzburger Kulturförderungsgesetz, LGBl Nr 51/1980, außer Kraft.</p> <p>(3) Für die erstmalige Durchführung der Wahl gemäß § 5 Abs 4 bleiben die am 31. Dezember 1997 im Amt befindlichen Mitglieder bis zur Wahl von vier Mitgliedern des Wahlkollegiums und diese Mitglieder des Wahlkollegiums dann weiter bis zur Wahl von 16 Mitgliedern des Landes-Kulturbeirates weiter im Amt.</p>	<p>(5) 주정부는 주문화심의회의 인식하에 분과심의회를 통하여 직접 조연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8조(시행, 경과규정)</p> <p>(1) 이 법률은 1998년 4월 1일에 시행한다.</p> <p>(2) 이와 함께 찰츠부르크 문화진흥법, LGBl Nr 51/1980은 폐지한다.</p> <p>(3) 제5조 4항에 의거한 첫 선거의 시행을 위하여 1997. 12. 31.까지 재임하는 위원은 4명의 선거위원단의 선출까지 그리고 이 4명의 선거위원단은 주문화심의회의 16인의 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재임한다.</p>
--	--

제5장

결론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있어 고려할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 I. 머리말
- II. 목적 규정
- III. 정의 규정
- IV.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적 정합성
검토
- V.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구 설치
여부
- VI. 문화도시 등 조성
- VII. 기금
- VIII. 지역문화시설 지원 여부

I. 머리말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과는 별도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을 다룰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문화예술진흥법을 토대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같은 물질적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창의성과 매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⁶⁶⁾ 이러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 필요조건이다. 왜냐 하면 개성과 특성 있는 지역문화예술은 지역주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 참여와 자주성을 유발시키게 되어 종국적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⁶⁷⁾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포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과 별도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목적, 정의규정, 기본이념, 시책,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전제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조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활용,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위상 재정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이들 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재고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는 지역문화진흥법안의 법명과는 달리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이라는 법명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왜냐 하면 지역문화진흥법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과의 상관관계 및 지역문화의 정의의 모호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문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포섭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나 문화예술진흥법과의 법체계적 일관성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구로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 법명은 지역문화예술진흥법으로

66) 김명용,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5년 12월, 15면.

67) 위의 보고서, 15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I. 목적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는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야 할 듯싶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좌표를 설정한 것이라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참고로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률은 문화예술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오는 것인 것에 비추어 보아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에 관한 활동(이하 「문화예술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람(문화예술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할 취지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국민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 문화예술진흥법의 1차적 목적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고, 동 법의 궁극적 목적은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적 목적 및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의 1차적인 목적이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국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의 창조 및 새로운 문화의 확산도 동법의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1차적 목적은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문화 창달로 되어 있어 세계화 시대에는 걸맞지 않은 듯싶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의 목적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를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밝힘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며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향유자의 권익과 창작자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건설을 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내지 "문화기본법"으로 승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문화예술진흥법과는 달리 지역단위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실질적 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 제1조는 "이 법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며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이다.

III. 정의규정

(1)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 법안 제2조는 정의규정을 담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정의할 용어로는 '지역',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등이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이란 용어를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문화시설'을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찾고 있다.

(3)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⁶⁸⁾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제2조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과 '지역'을 구별하여 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글래스(Glasson)은 '지방'으로 번역되는 'Local'은 국가의 최소하위단위를 말하고, '지역'으로 번역되는 'Region'은 전국과 최하위 공간단위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성을 지닌 중간계층 수준의 공간단위를 지칭한다고 보았다. 지역과 지방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역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이고 대립되는 상대적 개념보다는 층위의 개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지방이라는 개념은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중앙대 지방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다.⁶⁹⁾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8)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 나타난 지역의 개념은 '독특한 물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영토적 단위로 규정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⁷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과 지역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치중립적 개념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이란 개념보다 지역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경우에 굳이 지역이란 개념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문화예술'이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으로 정의하면 될 것이고, '지역문화산업'은 '시·도 및 자치구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시설'은 '시·도 및 자치구에 있어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69) 정광렬, 「본권시대 지역문화진흥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년, 15-17면.

7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류정아 책임집필), 앞의 책, 20면.

IV.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적 정합성 검토

(1)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자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과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문화재단 설립,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규정들은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3)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지방문화원은 (i)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ii)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iii)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iv)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v)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vi)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vii)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viii)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ix)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며(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이 연합회는 법인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그리고 재정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개인·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관주도의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민간주도의 지방문화원을 배제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재단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지방문화원과 역할 및 업무가 중복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논의함에 있어 문화예술진흥법의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재단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지방문화원을 같이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4)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호간의 법체계 정합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는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와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양 법이 저촉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활동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과 중복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및 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에서도 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6)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일부개정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71호)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이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그리고 문화산업에 관한 개별법으로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등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산업'을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에서는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i)영화와 관련된 산업, (ii)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iii)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iv)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v)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vi)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vii)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viii)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일컫는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서로 중복되는 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두 법의 저촉 가능성을 피하고 있다.

V.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구 설치 여부

(1)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문화예술 관련 재단 법인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즉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시·도에는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기구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로 둘 수 있으며, 지역의 자발성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문화재단을 둘 수 있다.⁷¹⁾

(2)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 및 제주에는 지방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지방문화재단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문화재단의 설립근거 및 법적 성격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두 기구 간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시·도와는 달리 그 기능에서 편차가 심하게 난다. 다시 말하면 문화시설의 운영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는 재단, 정책개발과 네트워킹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는 재단,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시설운영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재단 등 차이가 있다.⁷²⁾

지역의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중앙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의 지역별 이전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을 지역 자체의 문예진흥기금과 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의 열악한 문화재정과 지방행정의 특성에 기인하는 문화행정인력의 비전문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⁷³⁾

71) 위의 책, 43면.

72) 위의 책, 43면.

(4)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간의 협의체 구성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협의체는 단순한 연락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⁷⁴⁾

그리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설치할 수 있으나, 이는 관주도의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재단과는 달리 민간주도형 기구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재단 이외의 기구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법인으로 하더라도 (i)중앙정부주도의 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법적 기구 형태), (ii)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구(지방문화예술위원회), (iii)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외부의 재단법인(지방문화재단), (iv)민간주도의 법인(지방문화원) 등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리고 그 재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그 상황은 열악한 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에만 집중하지 않는 관계로 더더욱 그러하다.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설치 여부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1항).

예컨대 지역문화 증진과 예술문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제도로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들 수 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그 주된 내용으로는 도지사 직속으로 경상북도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정·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이며, 국가와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출연 기금을 마련하여 진흥기금을 적립해 그 이자로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들에 소모하고 있다.⁷⁵⁾ 하지만 경상북도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문화단체 내의 문화예술인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문화정책의 혜택을 거의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독선적이거나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있고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화행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73) 위의 책, 44-45면.

74) 위의 책, 45면.

75) 위의 책, 518면.

문화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소통문제도 부재한 탓에 각종 필수정보의 교류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⁶⁾

(5)현재의 지방문화예술위원회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상 지방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간주도의 법인으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문화원과 의 관계가 문제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존재하고 그 업무 영역을 재설정하면 굳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법정기구(행정위원회의 형태)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한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분소로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관변단체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화정책은 실현할 수 있으나 여전히 민간주도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는 자 중 문화예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추천하며 이들을 반드시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체계를 법률 또는 명령으로 규정하여 두면 그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의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위원들을 선임하되 그 위원의 자격은 법률 내지 명령으로 규정하여 지방분권화, 문화예술인의 접근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상 지방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은 삭제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전술한 고려사항을 이 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7)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을 강행하는 협력규정을

76) 위의 책, 517면.

둘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협력 요청 규정을 두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간의 협조관계를 중립적인 관계에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 차원의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은 전국적인 협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지역 차원의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은 중앙 차원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고려사항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중앙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평가된다.

(8)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용처에 대한 감독권한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그 자생력 및 다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의 심의의결기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i)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ii)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iii)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iv)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v)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vi)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vii)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viii)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어 심의의결기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관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을 두고 그 심의의결기관화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면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방문화예술위원회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9) 그리고 타 부처의 행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역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관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중요하고 그 비중이 남다른 바, 이를 십분 활용하여 그 전문성을 발휘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분쟁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 부여는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해도를 증진하여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행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신중성 및 제3자성 등이 법원에 비해 취약하므로 그 분쟁조정 효력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분쟁조정 효력에 당사자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0)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화 및 지역화(globalization)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가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는 바, 그 역할을 국내로 국한할 필요도 없고, 그 역할을 중앙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중 지역인사의 참여를 늘일 필요가 있으며, 국제화를 추진할 인사의 참여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으며 문화예술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VI. 문화도시 등 조성

(1)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71호 ; 한시법 : 2026. 12. 31)은 한시법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광주광역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한시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조문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의 조성은 국토해양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7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동조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27조 제4항에서는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문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부처간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도시 조성에 국토가 이용되는 한, 국토해양부의 양해가 필요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처럼 법률에 규정하고, 관계 행정청의 장과 사전 협의 및 국무총리 소속 문화도시조성심의회의 심의(국토해양부 차관도 참석)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문화도시 조성을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사업으로 중앙부처 전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형태를 띠 때에 그 성공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시범도시 지정사업은 지역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공가능성도 낮아진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전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 예컨대 광주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경우에는 3216억 원, 경주역사문화도시의 경우에는 40억 원, 전주전통문화도시의 경우에는 30억 원, 부산영상도시의 경우에는 145억 원의 국고 지원이 있었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그 법적 근거가 있으나,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상 문화도시 조성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7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문화도시 조성의 사업 추진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므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이외의 중앙부처에서도 사업목적에 따라 도시 등에 관한 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8조 제1항)⁷⁷⁾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할 여지는 없다.

문화도시에 관한 규정은 두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적 도시개발과 거시적 문화환경의 조성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종합계획에는 (i)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ii)문화예술, 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iii)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iv)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v)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vi)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vii)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및 (viii)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의 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무총리 소속 문화도시조성위원회(각 부처 차관 참석)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도시의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 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는 경관·고도·보존·방재·취락·개발·진흥·지구 등의 용도지구 제도가 있으나,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문화지구에 대한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으로 이관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3)문화도시 일반에 관한 개별법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나, 그에 관련된 규정이 많지 않은 바, 별도의 법률을 입안하기보다는 문화도시에 관한 개별규정을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안이라고 생각한다.

(4)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71호; 한시법 : 2026. 12. 31)의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토대로 문화도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에 둘 필요가 있다.

VII. 기금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하여 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게 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i)정부의 출연금, (ii)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iii)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iv)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서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하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의 문화재단은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운용 및 관리를 하므로 그 장의 의지가 문화예술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지역문화예술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법률 내지 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문화가 순수지방공공재라면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체재원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총체가 대한민국의 문화라면 지역문화를 순수지방공공재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진흥기금의 일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는 국가가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하는 기부문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⁷⁸⁾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문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의 공제한도확대 및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78)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체의 외부지원금 비율은 공공지원금이 75%인데 반해, 미국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개인기부가 62% 정도라고 한다. 전병태, 앞의 책, 124면.

VIII. 지역문화시설 지원 여부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은 지역문화진흥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국·공유재산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본다. 「국유재산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더욱이 지역문화진흥법(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지역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버금가는 방법으로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유재산법」의 입법정신에 따라 동 조항은 의미 없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제8판, 법문사, 2008년.
- 김명용,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5년 12월.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년.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06년.
- 박영도,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5년 8월.
- 성낙인,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08년.
- 양종회/김우식/송도영/이호영, 「미국의 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 2004년.
- 이승엽,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 용역 보고서」, 2006년 11월.
- 전병태, 「지역문화진흥법(안) 시행령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년.
- 정갑영, 「문화복지사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년.
- 정광렬, 「분권시대 지역문화진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년.
- 주성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선 방향", 「국회보」 통권 제475호, 국회사무처, 2006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류정아 책임집필), 「한국의 지역문화 -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대왕사, 2008년.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제15판, 박영사, 2007년.
- Alexander Lindey and Michael Landau, 1A Lindey on Entertainment, Publ. & the Arts §4:1 (3d ed., 2008).
- Pernice-Grundgesetz Kommentar, Bd. I, Rz. 47, Art. 5 III.
- 웹사이트 <http://www.kulturstiftung-des-bundes.de/> (2008년 7월 15일 최종 방문).

